

공개용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 의결서

(조사번호 : 구제 23-2024-6호)

2025. 5. 22.

무 역 위 원 회

안내 사항

< 비밀취급 자료 관련 >

-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 관세청 수입통계자료, 정보유통기업의 유료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함
-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등의 자료는 환산값과 증감률을 표시함
 - 환산값은 예시와 같이 기준 연도 값을 설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을 반영한 환산값을 제시하되, 기준 연도 값과 환산값은 본문과 표에 "12,345"(기울임, 밑줄)의 형태로 표시함

※ 예) 기준 연도 값 : 1,000

- '가격 차이' 자료는 공개될 경우, 상대방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수치를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 시장점유율, 국내 동종물품 가동률, 물량 비중, 원가구성비 등 비율(%)로 표시되는 자료는 수치를 공개하지 않되, 변동폭(%p로 표시)을 표시함

※ 예) 10.0% → 15.0%로 증가한 경우 5.0%p로 표시

- 기준 연도 값이 음의 부호('-')인 경우에는 '적자'로 표시하고 다음 연도에는 '적자 확대', '흑자 전환' 등으로 표시함

무 역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의결 제2025-13호

조 사 번 호 구제 23-2024-6호

조 사 건 명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신 청 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 (마곡동)

대표자 김 영 범

대리인 법률사무소 학훈

담당변호사 김학훈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한동운

피 신 청 인 < 중국 >

1. 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형허)¹⁾
2. Ningbo Yonghua Resin Co., Ltd. (용화)
3. 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텐진루화)
4. 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우한루화)
5. 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 (진하이)
6. 그 밖의 공급자

< 대만 >

1. Yuen Liang Industrial & Co., Ltd. (웬량)
2. Chuen Huah Chemical Co., Ltd. (추엔화)
3. 그 밖의 공급자

조 사 대 상 물 품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HS 코드 : 3911.10.1000

의 결 일 2025. 5. 22.

상기 안전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등 관련 규정과 관세법 제51조,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63조 및 65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판정한다.
2. 이에 따라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관세법 제56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등에 따라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 공급자별로 다음과 같은 율의 덤핑 방지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한다.

1) 각 피신청인의 주소는 “[별지] 피신청인의 주소”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중국의 헝허, 용화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07%
- 텐진루화,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50%
- 진하이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26%
- 그 밖의 공급자 : 3.50%
- 대만의 아로켄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7.07%
- 추엔화화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8.52%
- 그 밖의 공급자 : 7.07%

이 유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이하 “신청인”)가 2024.5.31. 신청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건(조사개시 : 2024.8.2.)에 대하여, 무역조사실(이하 “조사실”)은 신청인, 공급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질의서에 의한 서면조사, 공청회 개최,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최종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WTO 반덤핑협정 관련 규정들과 관세법 제51조2) 및 제52조3),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제9항제1호4),

2) 관세법 제51조 : (생략)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제63조제1항 및 제4항5), 제65조제1항 및 제2항6)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문과 같이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정하고,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I. 배경

신청인은 2024.5.31.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조사실은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2024.8.2. 관보에 게재하였다.

국내생산자는 신청인 이외에 한화솔루션 주식회사(이하 “한화솔루션”)가 있으며, 조사실은 국내생산자에 대하여 질의서를 발송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 3) 관세법 제52조 : ①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략)
 - 4)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
 - 2.~3. (생략)
 - 5) 관세법 시행령 제63조 : ①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후략), ②~③ (생략), ④무역위원회는 덤핑물품 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해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덤핑물품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6)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 ①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한다., ②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대상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공급자”라 한다), 2. 조사대상공급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공급자 (후략), ③~⑦ (생략)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상 수입물량 등을 고려하여 중국의 ‘형허’, ‘용화’, ‘텐진루화’, ‘우한루화’, ‘진하이’ 5개사와 대만의 ‘웬량’, ‘추엔화’ 2개사를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고, 해외공급자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실은 삼간교역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솔캠, 주식회사 유창에프씨, 에버캠 주식회사, 헨켈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정석케미칼, 주식회사 대양산업 등 국내 수입자와 수요자에 대해서도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해관계인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6.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5.3.20. 본건 조사의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하여 본건 조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9조에 따라 최종판정 전에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이 포함된 조사내용을 2025.4.23.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부하고, 2025.5.2. 최종덤핑률 관련 이해관계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II. 조사대상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1. 조사대상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과 제3항은 무역위원회가 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보에 게재된 무역위원회 공고 제2024-13호(2024.8.2.)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의 품명은 석유수지(Petroleum Resin)이고, 관세품목분류(HSK)는 3911.10.1000이다.

조사보고서⁷⁾에 의하면, 조사대상물품의 조사범위는 나프타(Naphtha)의 열분해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올레핀⁸⁾이나 디올레핀⁹⁾을 함유한 C5¹⁰⁾ 및 C9¹¹⁾ 유분(溜分) 또는 디싸이클로펜타디엔(DCPD)¹²⁾을 단일 또는 혼합 투입하여 중합¹³⁾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수지이다. 다만, 연화점(녹는점)이 130℃ 이상인 C9 석유수지는 조사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7) 조사보고서 pp.3-5

8) 올레핀이란 천연가스나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불포화 탄화수소를 의미함

9) 디올레핀이란 탄소의 이중결합된 화합물을 의미하며, 다이올레핀(diolefin)이라고도 불림

10) 나프타(Naphtha) 크래킹시 추출되는 기초유분 중 다섯 개의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임

11) 나프타(Naphtha) 크래킹시 추출되는 기초유분 중 8~9 개의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임

12) 디싸이클로펜타디엔은 C5 원료를 정제하여 얻을 수 있는 단량체인 싸이클로펜타디엔(CPD : cyclopentadiene)을 유기반응(Diels-Alder reaction)을 통해 이량화시킨 화합물임

13) 중합(Polymerization)이란 어떤 화합물 분자가 2개 이상 결합하여 분자량이 보다 큰 새로운 화합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뜻함(즉, 고분자를 만드는 과정)

2. 국내 동종물품

가. 동종물품 여부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과 WTO 반덤핑협정 제2.6조에 따르면,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조사보고서¹⁴⁾에 의하면, 국내생산품이 물리적 특성, 용도, 제조공정, 유통경로, 품질 등 측면에서 조사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검토하였다.

조사보고서¹⁵⁾에 의하면, 주식회사 위드텍은 국내제품(쿠마론수지) 생산중단으로 인하여 대만 웬량의 C9제품(모델명 SK-100)을 수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신청인이 생산중단한 쿠마론수지는 조사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주)위드텍이 사용하는 대만산 C9제품(SK-100)은 신청인이 생산하는 C9제품(P-90HS 또는 P-90I)으로 대체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 결과에 따라 국내생산품이 조사대상물품과 물리적 특성, 용도, 제조공정, 유통경로, 품질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상업적으로 대체가능한 동종물품으로 판단한다.

14) 조사보고서 pp.7-9

15) 조사보고서 p.8.

Ⅲ. 국내산업의 범위 및 비밀취급

1.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과 WTO 반덤핑협정 제4.1조에 따르면,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하지 않은 생산자와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조사보고서¹⁶⁾를 기준으로 조사대상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국내총생산량 비중,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 국내생산자의 조사대상물품 수입 여부, 국내생산자의 당해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조사실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2023.12.1.~2024.5.30.)에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고, 2023년 신청인의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70%대로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국내생산자인 신청인이 이용가능한 국내산업 피해지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였고, 2023년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70%대로 국내 총생산량

16) 조사보고서 pp.11-12

의 상당 부분을 점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조사에서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국내산업”은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신청인의 동종물품 생산사업”으로 판단한다.

2. 비밀취급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신청서, 조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등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보고서¹⁷⁾에 의하면, 신청인 등 국내생산자, 조사대상공급자, 수입자 및 수요자는 조사신청서,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의견서 등 비밀취급요청 자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였고, 이와 함께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신청인 등 국내생산자, 조사대상공급자, 수입자 및 수요자가 비밀취급요청 자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제출한 점, 비밀취급요청 자료가 공개될 경우 자료 제출자 및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료들을 비밀로 취급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¹⁷⁾ 조사보고서 pp.16-19

IV. 덤핑사실

위원회는 덤핑사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조사대상 공급자의 선정 및 조사 경과 등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공급자별로 덤핑사실 여부를 검토하였다.

1. 덤핑사실 조사대상공급자 선정

조사보고서¹⁸⁾에 의하면, 조사실은 조사개시 당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서 확인된 중국의 ‘형허’, ‘용화’, ‘텐진루화’, ‘우한루화’, ‘진하이’ 5개사와 대만의 ‘웬량’, ‘추엔화’ 2개사를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조사참여신청기간¹⁹⁾ 동안 선정된 모든 조사대상공급자는 조사참여신청서를 제출(2024.8.21.~8.23.)하여, 조사에 대한 참여 및 협조 의사를 표명하였다.

2. 덤핑사실 조사경과

조사보고서²⁰⁾에 의하면, 조사실은 2024.8.2. 덤핑사실 조사를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답변기한 : 2024.9.13.)을 정하여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질의서 등을 발송하였다.

18) 조사보고서 p.20

19) 조사참여 신청기간 : 2024. 8.2. ~ 8.23.

20) 조사보고서 p.20

중국의 모든 조사대상공급자는 2024.9.5.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연장 사유를 검토하여 당초 2024.9.13.이었던 답변기한을 진하이는 2024.9.20.로 용화, 형허, 텐진루화, 우한루화는 2024.9.23.로 각각 7일 및 10일 연장하고 2024.9.6. 이를 통보하였다. 중국의 모든 조사대상공급자는 연장된 기한인 2024.9.20.과 2024.9.23.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대만의 조사대상공급자 중 '웬량'은 2024.9.5.에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연장 사유를 검토하여 당초 2024.9.13.이었던 답변기한을 2024.9.20.로 연장하고 이를 2024.9.6. 통보하였다. '웬량'은 연장된 기한인 2024.9.20.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대만 조사대상공급자 중 추엔화²¹⁾는 조사참여신청은 하였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에 대응하지 않았다.

조사실은 2024.10.21. 중국의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 '텐진루화,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 '진하이'에게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고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 '텐진루화,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 '진하이'는 2024.10.28.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2024.10.28. 중국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에 2차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고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는 기한인 2024.11.4. 보충질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2024.11.6. 대만 '아로캠 및 관계사'에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고 대만 '아로캠 및 관계사'는 기한인 2024.11.13. 보충질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예비판정 전 WTO 반덤핑협정 제6.2조,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21) 대만의 추엔화는 석유수지를 수출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조사대상공급자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24.8.19.)하였으나, 조사실은 추엔화가 한국 관세청의 수입통관정보에 따라 선정되었으므로 조사대상 제외요청을 수용할 수 없음을 검토 회신('24.9.2.)하였음

2024.12.17. 이해관계인회의를 개최(온라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된 이해관계인이 덤핑 조사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조사실은 예비판정(2024.12.19.) 이후 본조사를 진행하여 조사대상공급자의 자료 등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에 대응한 모든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실사 안내서 및 질의서를 2025.3.4.과 2025.3.12. 두차례 나눠 송부하였다. 모든 조사대상공급자가 현지 실사 동의서 및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텐진루화,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는 2025.3.13.~3.14., 대만 '아로켄 및 그 관계사'는 2025.3.17.~3.18.,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는 2025.3.24.~3.26., 진하이는 2025.3.27.~3.28. 각각 답변자료의 완전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하여 실사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사실은 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덤핑률(안)을 산정하고, WTO 반덤핑협정 제6.2조, 제6.9조 등의 규정에 따라 그 산정 내역 등을 각 조사대상공급자, 신청인 등에게 통보(2025.4.23.)하고 의견 제출기회(2025.4.23.~4.30.)를 제공하였다. 조사에 대응한 중국 및 대만의 모든 조사대상공급자와 신청인은 최종덤핑률(안)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인 회의(2025.5.2.)에 참석하지 않았다.

3.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

위원회는 조사실의 덤핑사실 조사가 WTO 반덤핑협정 및 관세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 중국 >

가.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이하 '피신청인')

조사보고서²²⁾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중국 저장성 및 난징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자이자 수출자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형허', '용화'와 관계사 '형허난징'은 동일지배주주 관계사로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 및 지분관계 등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바, 단일경제실체(single economic entity)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사보고서²³⁾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총매출액은 xxx백만 RMB(약 xxx조원)이며 조사대상물품 매출액은 xxx백만RMB(약 xxx조원), 대한민국 수출액은 xxx백만RMB(약 xxx억원)으로, 중국 내수시장, 한국 및 제3국에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하였고 내수시장에는 약 xxx천톤을 판매하였으며, 한국에 약 xxx천톤을 수출하였다.

조사보고서²⁴⁾에 의하면,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보충질의 답변서의 내수판매 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토대로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22) 조사보고서 p.23

23) 조사보고서 p.24.

24) 조사보고서 p.25.

다만, 제조원가의 경우, 용화가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주요투입요소(피페릴렌) 자료에서 관계사 공급자명과 공급사의 COP가 불일치함이 발견되어, 다른 조사대상 공급자 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사(쓰보 루화)의 COP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피신청인의 제조원가를 상향 조정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합리적인 기간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등에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에 따라 질의서 송부시,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출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판정을 하는 경우,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한 다른 조사대상공급자 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사의 COP 는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이며, 보충 질의를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은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답변자료를 부인하고 보충 질의에서 검증한 다른 조사대상공급자 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사의 COP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용화의 제조원가를 22.32%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신용기간의 경우 조사실은 원답변서의 입금일자와 보충질의에서 제출된 수출 입금증빙일자 자료와의 불일치가 발견됨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전체 수출 거래건중 상위 10개의 평균 신용기간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합리적인 기간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등에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에 따라 질의서 송부시,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출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판정을 하는 경우,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한 조사대상 공급자의 수출 입금증빙일자 자료는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이며, 보충 질의를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은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답변자료를 부인하고 조사대상공급자의 전체 수출 거래건 중 상위 10개의 평균 신용기간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판매관리비의 경우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와 관련이 없는 영업외수익 등은 제외하였다.

피신청인은 조사실에서 제시한 CCN 분류기준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받고 CCN 구성방법 등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²⁵⁾를 가졌으며, 별도 의견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조사실은 답변서 검토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회사 브로셔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CCN 부여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검토한 결과, 녹는 온도 경계에 있는 PR-110-11 모델의 CCN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조사대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조사보고서²⁶⁾에 의하면,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의 내수판매에 대해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을 실시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25) 이해관계인은 관보가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 CCN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다.

26) 조사보고서 pp.28~30.

조사실은 통상거래가격이 확인된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고, 정상가격에서 물류비용, 신용비용, 포장비용을 가감하여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내륙운반비, 창고비 등 물류비용은 예비판정까지 거래건별 배분 기준 및 방식 등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 및 충분한 증빙이 부족하여 조정요소에서 제외하였으나, 실사에서 확인되어 정상가격에서 내륙운반비와 창고비 등 물류비용을 조정하였다.

조사실은 피신청인의 대한민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내륙운반비, 창고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판매수수료 및 포장비용을 조정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또한, 과세가격은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로 환산하여 적용하였으며,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3.07%의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제2.4조,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2 제7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종덤핑률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나. 텐진루화,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 (이하 '피신청인')

조사보고서²⁷⁾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중국 텐진과 후베이성에 소재하고 있는

²⁷⁾ 조사보고서 p.36.

생산자이자 수출자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텐진루화',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들은 동일지배주주 관계사로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 및 지분관계 등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바, 단일경제실체(single economic entity)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사보고서²⁸⁾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총매출액은 xxx백만 RMB(약 xxx조원)이며 조사대상물품 매출액은 xxx백만RMB(약 xxx조원), 대한민국 수출액은 xxx백만RMB(약 xxx억원)으로 중국 내수시장, 한국 및 제3국에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하였다.

조사보고서²⁹⁾에 의하면,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보충질의 답변서의 내수판매 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토대로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다만,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주요 원재료 중 피페틸렌, DCPD, C5, 수소 일부를 관계사로부터 싸게 구매하였음을 확인하고 비관계사 구매가격, 관계사 COP, 관계사의 비관계사에 대한 판매가격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텐진루화, 쓰보루화, 푸젠루화의 제조원가를 각각 2.6%, 3.3%, 0.5%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판매관리비(SG&A)의 경우에는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와 관련이 없는 영업외수익 등은 제외하였다.

28) 조사보고서 p.37.

29) 조사보고서 p.38.

피신청인은 조사실에서 제시한 CCN 분류기준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받고 CCN 구성방법 등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를 가졌으며, 별도 의견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당초 제시된 CCN을 기준으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조사보고서³⁰⁾에 의하면,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의 내수판매에 대해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을 실시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정상가격 조정요소는 물류비용, 신용비용, 포장비용을 적용하였다. 조사실은 내륙운반비, 창고비 등 물류비용은 예비판정까지 거래건별 배분 기준 및 방식 등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 및 충분한 증빙이 부족하여 조정요소에서 제외하였으나, 실사에서 확인되어 정상가격에서 내륙운반비와 창고비 등 물류비용을 조정하였다.

조사실은 피신청인의 대한민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포장비용을 조정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또한, 과세가격은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로 환산하여 적용하였으며,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3.50%의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30) 조사보고서 pp.39~42.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제2.4조,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2 제7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종덤핑률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다. 진하이(이하 '피신청인')

조사보고서³¹⁾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중국 저장성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자이자 수출자로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여 직접 내수 및 한국, 제3국 시장에 판매하였다.

조사보고서³²⁾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총매출액은 xxx백만 RMB(약 xxx조원)이며 조사대상물품 매출액은 xxx백만RMB(약 xxx조원), 대한민국 수출액은 xxx백만RMB(약 xxx억원)으로 내수시장에 약 xxx천톤을 판매하였으며, 한국에 약 xxx천톤을 수출하였다.

조사보고서³³⁾에 의하면,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보충질의 답변서의 내수판매 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 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토대로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다만, 신용기간의 경우 원답변서의 입금일자와 보충질의에서 제출된 수출 입금 증빙일자 자료와의 불일치가 발견됨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전체 수출 거래건 중 가장 긴 신용기간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31) 조사보고서 pp.47~48.

32) 조사보고서 p.49.

33) 조사보고서 p.49.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합리적인 기간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등에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에 따라 질의서 송부시,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출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판정을 하는 경우,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한 다른 조사대상공급자의 수출 입금증빙일자 자료는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이며, 보충 질의를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은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답변자료를 부인하고 보충 질의에서 검증한 조사대상공급자의 가장 긴 신용기간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판매관리비(SG&A)는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와 관련이 없는 영업 외수익 등은 제외하였다.

피신청인은 조사실에서 제시한 CCN 분류기준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받고 CCN 구성방법 등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³⁴⁾를 가졌으며, 별도 의견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는 바, 조사실은 당초 제시된 CCN을 기준으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조사보고서³⁵⁾에 의하면,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의 내수판매에 대해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을 실시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통상거래가격이 확인된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고, 정상가격에서 물류비용, 신용비용, 포장비용을 조정하여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내륙운반비, 창고비 등 물류비용은 예비판정까지 거래건별 배분 기준 및 방식 등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 및 충분한 증빙이 부족하여 조정요소에서 제외하였으나, 실사에서 확인되어 정상가격에서 내륙운반비와 창고비 등 물류비용을 조정하였다.

조사실은 피신청인의 대한민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내륙운반비, 창고비용,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포장비용을 조정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34) 이해관계인은 관보가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 CCN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다.

35) 조사보고서 pp.50~52.

또한, 과세가격은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로 환산하여 적용하였으며,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2.26%의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제2.4조,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2 제7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종덤핑률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라. 그 밖의 공급자

조사보고서³⁶⁾에 의하면, 조사실은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3.50%의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9.4조의 (i)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고 결정한다.

마.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검토

조사보고서³⁷⁾에 의하면, WTO 반덤핑협정 2.2조는 수출국시장의 특별한 시장상황

36) 조사보고서 p.55.

37) 조사보고서 p.56.

(PMS)으로 내수가격 對 수출가격의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 내수가격을 제3국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조사보고서³⁸⁾에 의하면, 신청인은 러-우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산 나프타 가격 급락을 특별한 시장 상황으로 보고, 이 때문에 중국 생산자들이 낮은 원가로 제품을 생산하여 덤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덤핑마진 계산 시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사보고서³⁹⁾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PMS를 적용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나프타 시세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PMS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 기준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신청인의 의견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사보고서⁴⁰⁾에 의하면, 조사실은 중국산 석유수지의 특별시장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PMS를 주장하는 신청인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러-우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입가격 하락 및 최대 수입국 변화 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PMS 판단 근거가 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조사실은 PMS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PMS 판단을 위하여 조사실에서 요청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자료 또한 미흡하다고 판단하며, 조사실의 검토 결과가 적절하다고 결정한다.

38) 조사보고서 p.56.

39) 조사보고서 p.57.

40) 조사보고서 pp.57~58.

< 대만 >

가. 아로캠 및 그 관계사⁴¹⁾(이하 '피신청인')

조사보고서⁴²⁾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대만 가오슝에 소재하고 있으며, 아로캠은 생산자이자 내수판매자이며 관계사인 웬량은 아로캠의 수출판매사이다.

조사실은 '아로캠'과 관계사 '웬량'은 공통 주주 및 이사회 구성원이 있고, 사무실을 공유하는 관계사로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 및 지분관계 등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바, 단일경제실체(single economic entity)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사대상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총매출액은 xxx백만NTD(약 xxx조원), 조사대상물품의 매출액은 xxx백만NTD(약 xxx조원), 대한민국 수출액은 xxx백만NTD(약 xxx억원)으로, 내수시장에 약 xxx천톤을 판매하였으며, 한국에 약 xxx톤을 수출하였다.

조사보고서⁴³⁾에 의하면,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보충질의 답변서의 내수판매 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토대로,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41) 웬량은 아로캠의 수출관계사로서 생산자이자 판매자인 아로캠을 대표로 하고 웬량은 관계사로 표기하였다.

42) 조사보고서 p.52.

43) 조사보고서 p59.

피신청인은 조사실에서 제시한 CCN 분류기준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받고 CCN 구성방법 등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⁴⁴⁾를 가졌으며, 별도 의견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는 바, 조사실은 당초 제시된 CCN을 기준으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조사보고서⁴⁵⁾에 의하면,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의 내수판매에 대해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을 실시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통상거래가격이 확인된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고, 정상 가격에서 조기지급할인액, 금액조정, 내륙운반비,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수수료 및 포장비를 조정하였다.

조사실은 덤핑가격에서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 비용, 은행수수료, 수수료 및 포장비용을 조정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또한, 과세가격은 대한민국수출 시 CIF 조건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실제 수출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7.07%의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제2.4조,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44) 이해관계인은 관보가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 CCN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다.

45) 조사보고서 p61.

2 제7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종덤핑률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나. 추엔화 (이하 '피신청인')

조사보고서⁴⁶⁾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조사개시 당시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어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덤핑조사질의서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이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동 부속서2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 통관자료 및 조사신청서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르면, 조사대상공급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수가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바,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용가능한 자료사용이 가능하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 (2023.8.2.~9.13.)을 정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조사당국이 이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판정을 내리는 경우,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⁴⁶⁾ 조사보고서 p.68.

이해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덤핑가격 산정에 사용된 수입통계는 조사대상기간 중 독립된 기관인 관세청 통관 자료로 공식 수입통계에 해당하고 정상가격은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인 신청인의 신청서 자료로,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인 출처로 신청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은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덤핑률은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로서 관세청 통관자료와 조사신청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보고서⁴⁷⁾에 의하면, 과세가격은 수입통관가격(CIF)을 적용하였으며,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18.52%의 최종덤핑률이 산정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제2.4조,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2 제7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종덤핑률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47) 조사보고서 p.71.

다. 그 밖의 공급자

조사보고서⁴⁸⁾에 의하면, 조사실은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7.07%의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9.4조의 (i)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고 결정한다.

48) 조사보고서 p.71.

V. 국내산업의 피해

WTO 반덤핑협정 제3.1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고,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덤핑물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WTO 반덤핑협정 제3.2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덤핑물품의 수입물량과 관련하여서는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덤핑물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덤핑물품이 동종물품 가격과 비교하여 상당히 저가에 판매되었는지, 또는 상당한 정도로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가격상승을 억제하였는지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 제3.4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덤핑 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 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덤핑물품 수입의 물량 및 가격 효과와 국내산업의 생산량 및 가동률, 판매량 및 재고,

시장점유율, 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 효과 포함), 이윤, 투자수익률, 현금흐름, 고용 및 임금, 생산성, 성장성, 자본조달능력,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등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1. 덤핑물품의 누적 평가 적용 여부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르면,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덤핑차액 및 덤핑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덤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WTO 반덤핑협정 제3.3조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위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본 조사건의 누적평가 적용 여부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기로 한다.

가. 덤핑물품의 미소덤핑마진 및 미소수입물량 조건 충족 여부

조사보고서⁴⁹⁾에 의하면, 덤핑물품의 공급국별 덤핑률은 각각 중국산 2.26 ~ 3.50%, 대만산 7.07 ~ 18.52%로 미소덤핑마진 기준인 2% 이상이며, 조사대상물품의 총 수입물량 대비 덤핑물품의 국가별 수입물량 비중은 덤핑사실 조사대상기간 (2023.1.1~2023.12.31.) 동안 중국산 xxx%, 대만산 xxx%로 미소수입물량 기준인 3% 이상이므로, 위원회는 덤핑물품의 미소덤핑마진 및 미소수입물량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한다.

49) 조사보고서 p.75.

나. 경쟁조건의 판단기준

조사실은 덤핑물품의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덤핑물품 상호간 및 덤핑물품과 동종물품간 경쟁조건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들 간의 대체사용 가능성, 유통채널의 유사성, 같은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다. 덤핑물품간 경쟁조건

조사보고서⁵⁰⁾에 의하면, 조사실은 중국산 및 대만산 덤핑물품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덤핑물품간에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 구성요소 및 용도, 제조방법, 유통경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은 매년 국내시장으로 수입되어 판매 되었으므로 같은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중 톤당 판매가격을 보면, 중국산은 xxx~xxx천원, 대만산은 xxx~xxx천원으로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가격대에 있으며, 덤핑물품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가격 상승폭이 작은(연평균 2.1%) 중국산은 수입물량이 증가(연평균 16.9%)하였으나 연평균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연평균 3.6%) 대만산은 수입물량이 감소(연평균 -9.0%)한 점 등을 볼 때, 덤핑물품은 상업적으로 상호 대체되는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0) 조사보고서 pp.75-76.

라. 덤핑물품과 동종물품간 경쟁조건

조사보고서⁵¹⁾에 의하면, 조사실은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xxx~xxx% 수준의 저가로 판매되었고,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은 연도별 판매가격 등락의 방향도 일치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가격 상승폭이 작은(연평균 2.3%) 덤핑물품은 수입물량이 증가(연평균 14.6%)하였으나 연평균 가격 상승폭이 큰(연평균 4.7%) 동종물품은 판매물량이 감소(연평균 -13.8%)하여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국내생산품은 덤핑물품과 물리적 특성, 구성요소 및 용도, 품질 및 소비자 평가, 유통 경로 등 대부분의 요소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은 국내시장에서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종합검토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중국 및 대만산 덤핑물품은 미소덤핑마진 및 미소수입물량 이상이며, 국내시장에서 덤핑물품간 상호 경쟁조건에 있고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도 상호 경쟁조건에 있으므로,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평가함에 있어서 누적적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51) 조사보고서 p.77.

2. 답변서 제출 및 산업피해 분석 대상 국내 생산자

조사보고서⁵²⁾에 의하면, 중국측⁵³⁾은 한화솔루션에 국내생산자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생산자 답변서 제출이 어렵다면, 생산량, 가동률, 재고, 판매량, 시장점유율, 가격, 이윤 등에 대한 산업피해지표 제출을 요청하여 본건 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국내생산자 2개사 모두에 대해 질의서를 발송(2024.8.2.)하였고, 신청인만 답변서를 제출하여, 조사실은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제출자료가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고,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여부를 분석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제출자료가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대표하므로,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여부를 분석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이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3.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조사보고서⁵⁴⁾에 따르면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2020년 xxx톤에서 2023년 xxx톤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4.6%였는바, 덤핑물품 수입물량은 절대적으로 증가하였다.

52) 조사보고서 p.78.

53) 본 의결서에서 중국측은 중국 조사대상공급자인 형허, 용화, 텐진루화, 우한루화, 진하이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Commercial Legal Services Center)를 뜻함

54) 조사보고서 pp.79-82.

또한,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2020년 xxx%에서 2023년 xxx%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18.4%p 상승하였으나, 동종물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2020년 xxx%에서 2023년 xxx%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14.1%p 하락하였다. 이외에도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20년 xxx%에서 2023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4.3%p 하락하였다.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연평균 14.6% 증가하여 국내소비(연평균 3.3% 감소)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시장점유율 또한 확대(18.4%p 상승)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종물품의 판매량(연평균 13.8% 감소)과 점유율(14.1%p 감소)은 국내소비보다 더 많이 감소하여, 덤핑물품 수입물량의 상대적인 증가가 확인되었다.

중국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덤핑물품의 수입 증가는 기타국산 수입을 대체한 효과이고, 2023년에는 조사대상물품 및 기타국산의 수입 모두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18.4%p)한 반면, 국내동종물품은 지속적으로 감소(-14.1%p)하고, 기타국산 물품도 조사대상기간 중 4.3%p 감소하여 덤핑물품은 국내동종물품과 기타국산 물품 모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4.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조사보고서⁵⁵⁾에 따르면,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20년 xxx천원, 2021년 xxx천원, 2022년 xxx천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23년 xxx천원으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3% 상승하였다. 한편,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20년 xxx천원, 2021년 xxx천원, 2022년 xxx천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23년 xxx천원으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4.7% 상승하였다.

그에 따라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되었으며, 판매가격 등락의 방향이 일치하고 있어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 대비 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 수준으로 전체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되었다.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하락시켰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2021년과 2022년까지 상승하고, 2023년 4.8% 하락하여 연평균 2.3% 상승하였다. 한편,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도 2021년과 2022년까지 상승하고, 2023년 2.6% 하락하여 연평균 4.7% 상승하였다.

조사실은 2023년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xxx% 수준으로

55) 조사보고서 pp.83-86.

저가로 판매되었고, 전년대비 4.8% 하락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전년대비 2.6%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토하였다.

중국측은 2021년 덤핑물품 판매가격 상승률은 동종물품 판매가격 상승률보다 높고, 2022년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동종물품 판매가격이 15.2% 상승하였으며, 2023년 덤핑물품 판매가격 하락률은 동종물품 판매가격 하락률보다 커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2021년과 2022년 국내 동종물품의 제조원가가 전년대비 각각 15.1%, 30.0% 상승하였으나, 덤핑물품 판매가격이 전년대비 각각 1.5%, 10.7% 상승에 그침에 따라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전년대비 각각 2.3%, 15.2% 상승에 그쳐 제조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2023년의 경우 덤핑물품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78.0% 수준으로 저가에 판매되었고 전년대비 4.8% 하락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전년대비 2.6% 하락시킨 것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목표판매가격 대비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 판매가격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은 목표판매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실의 분석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하락 및 가격상승 억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5. 덩핑물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생산량 및 가동률

조사보고서⁵⁶⁾에 따르면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능력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간 xxx톤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2020년 xxx톤에서 2021년 xxx톤으로 7.4% 증가하였으나, 2022년 xxx톤으로 8.1% 감소, 2023년 xxx톤으로 20.9%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7.9%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산업 가동률은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로 상승했으나, 2022년 xxx%, 2023년 xxx%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17.9%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측은 국내산업의 생산감소원인에 대해 ①신청인의 수출감소가 주원인이고, ②2019년 11월 한화솔루션의 상업적 생산개시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 검토결과, ①신청인의 내수판매 감소율(연평균 -13.8%)이 수출 감소율(연평균 -4.9%)보다 훨씬 큰 것으로 검토되었다. ②중국측은 한화솔루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조사실은 한화솔루션에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한화솔루션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70%대로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여 신청인의 제출자료가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대표하였다. 또한, 덩핑물품 수입이 2020년 대비 2023년 50.4%(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4.6%)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한화솔루션이

56) 조사보고서 pp.87-88.

DCPD 석유수지만 생산한 점을 고려할 때 한화솔루션의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검토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생산량과 가동률이 하락한 것은 덤핑물품의 수입 확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나. 판매 및 재고

조사보고서⁵⁷⁾에 따르면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020년 xxx톤에서 2021년 xxx톤, 2022년 xxx톤, 2023년 xxx톤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3.8% 감소하였다. 한편, 국내 동종물품의 기말재고는 2020년 xxx톤에서 2023년 xxx톤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8% 증가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이 감소하였고, 기말재고가 상승한 것은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판단한다.

다. 시장점유율

조사보고서⁵⁸⁾에 따르면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57) 조사보고서 p.89.

58) 조사보고서 p.90.

14.1%p 하락하였다. 이에 반하여 덩핑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18.4%p 상승하였다. 이 외에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타국산 수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20년 xxx%에서 2023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4.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측은 2019년 11월 상업적 생산을 시작한 한화솔루션의 부정적 영향(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음)으로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중국측이 한화솔루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조사실은 한화솔루션에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한화솔루션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70%대로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여 신청인의 제출자료가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대표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덩핑물품 수입이 2020년 대비 2023년 50.4%(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4.6%)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한화솔루션이 DCPD 석유수지만 생산한 점을 고려할 때 한화솔루션의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덩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 추세가 상반된 변동을 보이고 있어 덩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덤핑마진의 크기

조사보고서⁵⁹⁾에 따르면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는 2020년 xxx천원에서 2021년 xxx천원으로 15.1% 상승, 2022년 xxx천원으로 30.0% 상승하다 2023년 xxx천원으로 2.6%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3.4% 상승하였다.

항목별로는 재료비 비중이 xxx~xxx%로 가장 커 동종물품 가격에 미친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재료비는 2021년 29.9% 상승, 2022년 43.8% 상승한 후 2023년 16.9%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5.8% 상승하였다.

조사대상기간 중 재료비는 연평균 15.8% 상승하고, 단위당 제조원가는 연평균 13.4% 상승하였으나, 덤핑물품 판매가격 상승폭이 연평균 2.3%에 불과함에 따라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연평균 4.7% 상승에 그쳐 제조원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바,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억제시킨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덤핑물품은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저가 판매되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 상승을 억제시킨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조사보고서⁶⁰⁾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덤핑물품의 덤핑률은 2.26 ~ 18.52%로 미소마진 이상이고, 덤핑물품의 수입물량과 가격을 감안할 때 덤핑마진의 크기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59) 조사보고서 p.91.

60) 조사보고서 p.92.

마. 이윤

조사보고서⁶¹⁾에 따르면 국내생산자의 동종물품 국내시장 매출액은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1년 xxx백만원, 2022년 xxx백만원, 2023년 xxx백만원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9.8% 감소하였고, 내수부문 영업이익은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1년 xxx백만원, 2022년 xxx백만원, 2023년 xxx백만원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75.9% 감소⁶²⁾하였다. 이에 따라 내수부문 영업이익률도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26.9%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측은 ①신청인의 수출감소, ②2019년 11월 상업적 생산을 시작한 한화솔루션의 부정적 영향(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음), ③노무비 및 제조경비 총액 증가, ④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⑤판매관리비 증가로 동종물품의 국내판매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 검토결과, ①신청인의 내수판매 감소율(연평균 -13.8%)이 수출 감소율(연평균 -4.9%)보다 훨씬 큰 것으로 검토되었다. ②중국측은 한화솔루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조사실은 한화솔루션에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한화솔루션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70%대로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여 신청인의 제출자료가 국내산업의

61) 조사보고서 pp.92-94.

62) 신청인의 수출 비중이 높아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 증가가 국내산업의 전체(내수+수출)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있을 것이나, 내수부문 영업이익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검토되었다.

피해사실을 대표하였다. 또한, 덤핑물품 수입이 2020년 대비 2023년 50.4%(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4.6%)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한화솔루션이 DCPD 석유수지만 생산한 점을 고려할 때 한화솔루션의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검토되었다. ③노무비 및 제조경비 총액은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각각 0.8% 및 2.2% 증가하여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④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화물기사의 6% 남짓으로 파업참여 화물기사는 컨테이너 트레일러나 시멘트 운송하는 조합원 비율이 높았으며, 화물연대 파업이 사전 예고되어 신청인의 출고일정 조정 등으로 파업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⑤판매관리비 증가는 주로 급여 및 지급수수료 등 증가에 따른 것이며, 조사대상기간 중 판매관리비의 변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조사대상기간 중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큰 폭(22.7%p)으로 감소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덤핑물품의 수입에 따라 국내산업의 이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바. 투자수익률

조사보고서⁶³⁾에 따르면 국내산업의 투자자산총액 대비 영업이익으로 계산된 투자수익률은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15.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3) 조사보고서 p.94.

사. 현금흐름

조사보고서⁶⁴⁾에 따르면 동종물품과 관련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1년 xxx백만원, 2022년 xxx백만원으로 순유입이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는 xxx백만원로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8.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 고용 및 임금

조사보고서⁶⁵⁾에 따르면 국내생산자의 연평균 고용인원(생산직+사무직)은 2020년 xxx명에서 2021년 xxx명, 2022년 xxx명, 2023년 xxx명으로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3% 증가하였다. 1인당 평균임금은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1년 xxx백만원으로 16.0% 증가, 2022년 xxx백만원으로 8.5% 감소, 2023년 xxx백만원으로 1.7% 증가함에 따라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2.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 생산성

조사보고서⁶⁶⁾에 따르면 1인당 생산량은 2020년 xxx톤에서 2021년 xxx톤, 2022년 xxx톤, 2023년 xxx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9.1% 감소하였다. 1인당 매출액은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1년 xxx백만원, 2022년 xxx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 xxx백만원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0% 감소하였고, 1인당 부가가치는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1년 xxx백만원, 2022년 xxx백만원, 2023년

64) 조사보고서 p.95.

65) 조사보고서 p.96.

66) 조사보고서 p.97

xxx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3.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 성장성

조사보고서⁶⁷⁾에 따르면 내수영업이익은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75.9% 감소하고, 시장점유율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14.1%p 감소하였으며, 가동률은 조사대상기간 중 17.9%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카. 자본조달능력

조사보고서⁶⁸⁾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내부 자본조달능력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조사보고서⁶⁹⁾에 따르면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매년 설비투자를 했는 바, 2020년 xxx백만원, 2021년 xxx백만원, 2022년 xxx백만원, 2023년 xxx백만원으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설비투자 금액은 연평균 41.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개발의 경우,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1년 xxx백만원, 2022년 xxx백만원으로 감소하다 2023년 xxx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7) 조사보고서 p.98.

68) 조사보고서 p.98.

69) 조사보고서 p.99.

파. 종합 검토

이상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 중 동종물품의 생산량 및 가동률 하락, 내수 판매량 감소, 영업이익의 감소, 투자수익률 감소, 현금흐름 악화, 1인당 부가가치 감소 등 국내산업 주요 지표 전반에서 실질적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직접적 가격경쟁 관계에 있는 덤핑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시장점유율도 증가한 반면, 동종물품의 판매량과 점유율은 감소하였고, 덤핑물품이 국내동종물품의 가격상승을 억제하거나 하락을 초래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VI.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WTO 반덤핑협정 제3.5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덤핑수입품이 동 협정 제3.2조와 제3.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동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덤핑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조사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덤핑물품 수입의 절대적·상대적 물량 및 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 및 가격에 미친 영향,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의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미친 영향 등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와 덤핑물품 수입 이외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기타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1.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조사보고서⁷⁰⁾에 따르면 조사실은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와 관련하여 덤핑물품 수입의 영향(물량 및 가격)과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덤핑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의 피해 발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연평균 14.6%)했고, 국내시장 점유율도 xxx%에서 xxx%로 크게 증가(조사대상기간 중 18.4%p)하였으며, 이에 따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의 점유율은 xxx%에서 xxx%까지 조사대상기간 동안 14.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덤핑물품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동종물품 대비 xxx%~xxx% 수

⁷⁰⁾ 조사보고서 pp.101-103

준의 저가로 판매되었고,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는 연평균 13.4%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덤핑물품 판매가격이 연평균 2.3% 상승함에 따라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연평균 4.7% 상승하여 제조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동종물품 가격상승 억제 및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 물품의 수입량 증가와 동종물품 대비 저가판매로 동종물품의 생산량 및 판매량은 대체로 하락하였고, 국내시장점유율과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즉,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 생산량은 연평균 7.9% 감소, 내수판매량은 연평균 13.8% 감소, 내수 영업이익률은 26.9%p 하락, 가동률은 17.9%p 하락했고, 1인당 부가가치는 연평균 23.3% 감소하는 등 국내산업피해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국내산업은 생산량 및 가동률 하락, 판매량 감소 및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손실 악화 등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2. 덤핑물품 이외 요인의 영향

가.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물량 및 가격

조사보고서⁷¹⁾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 이외 기타국산 수입물량은 2020년 xxx톤, 2021년 xxx톤, 2022년 xxx톤, 2023년 xxx톤으로 연평균 9.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도 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4.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71) 조사보고서 p.105.

또한,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타국산 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덤핑물품 판매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바, 기타국산 물품의 가격 효과가 국내 동종물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과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고, 그 판매가격도 덤핑물품보다 높았으므로 기타국산 물품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

나. 국내소비 변화

조사보고서⁷²⁾에 따르면 국내소비는 2020년 xxx톤에서 2021년xxx톤으로 2.5% 증가 후 2022년 xxx톤으로 13.8% 감소, 2023년 xxx톤으로 2.2% 증가하여 전체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3.3% 감소하였다.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020년 xxx톤에서 2021년 xxx톤, 2022년 xxx톤, 2023년 xxx톤으로 연평균 13.8% 감소하여 국내소비의 감소율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2020년 xxx톤에서 2021년 xxx톤으로 24.8% 증가, 2022년 xxx톤으로 8.0% 증가, 2023년 xxx톤으로 11.6% 증가하는 등 국내소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4.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국내소비가 감소한 시기에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 판매 감소율은 국내소비의 감소율보다 더 컸고, 국내소비가 증가한 시기에도 국내 동종 물품의 내수판매량은 감소한 반면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지속 증가하였는 바, 국내소비

72) 조사보고서 p.106.

감소보다 덤핑물품의 수입량 증가가 국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다. 수출 실적

조사보고서⁷³⁾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량은 2020년 xxx톤에서 2021년 xxx톤으로 5.3% 증가, 2022년 xxx톤으로 7.0% 감소, 2023년 xxx톤으로 12.1%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4.9% 감소하였고, 내수판매물량은 조사대상기간 중 수출물량 감소(연평균 -4.9%)보다 큰 폭으로(연평균 -13.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수출물량은 감소하여 내수판매물량 감소에 영향을 줄 여지가 없었고, 내수판매물량 감소율이 수출물량 감소율보다 훨씬 커 내수판매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라. 주요 원재료 가격추이

조사보고서⁷⁴⁾에 따르면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3.4 ~ 66.6% 수준이고, 주요 원재료는 C5, C9, DCPD으로 조사되었다. C5 톤당 가격은 2020년 xxx천원에서 2021년 xxx천원으로 33.2% 상승, 2022년 xxx천원으로 49.6% 상승 후 2023년 xxx천원으로 16.1%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8.7% 상승하였고, C9 톤당 가격은 2020년 xxx천원에서 2021년 xxx천원으로 30.6% 상승, 2022년

73) 조사보고서 p.107.

74) 조사보고서 p.108.

xxx천원으로 52.3% 상승 후 2023년 xxx천원으로 9.0%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1.9% 상승하였으며, DCPD 톤당 가격은 2020년 xxx천원에서 2021년 xxx천원으로 26.5% 상승, 2022년 xxx천원으로 49.4% 상승 후 2023년 xxx천원으로 22.0%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3.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기간 중 원재료비의 변동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과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조사대상기간 중 주요 원재료비가 연평균 13.8~21.9% 상승하였음에도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폭이 훨씬 작은 4.7%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 원재료비의 상승보다는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 억제 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마. 기타 요인

조사보고서⁷⁵⁾에 따르면, 위에서 검토한 사항 외에 WTO 반덤핑협정 제3.5조에 검토사항으로 열거된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양자간의 경쟁, 국내산업의 생산성 등에 관한 사항은 조사실에 제출되지 않았다.

75) 조사보고서 p.109

바. 소결

조사보고서⁷⁶⁾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과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였고, 동종물품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대로 수입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기타국산 수입품이 물량 또는 가격 측면에서 국내산업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동종 물품의 내수판매량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지속 감소하여 하락폭이 국내소비 변동폭보다 컸고, 국내생산자의 수출물량 감소율이 내수판매물량 감소율보다 작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소비 증감 또는 국내생산자의 해외수출 실적변동이 동종물품 내수판매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제조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재료비 가격의 상승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국내산업은 제조원가 변동내역을 판매가격에 제한적으로만 반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검토하였다.

3. 인과관계 종합 검토

조사실은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국의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조사 대상기간 동안 직접적 가격 경쟁 관계에 있는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감소하였다고

⁷⁶⁾ 조사보고서 p.109

검토하였다. 또한, 덤핑물품이 저가로 판매되어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은 목표 판매가격을 반영하지 못하여 덤핑물품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 또는 하락 시킨 것으로 검토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생산량 및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가동률 및 국내시장 점유율 또한 감소하였다고 검토하였다. 특히 이러한 영향은 국내산업의 주요지표인 영업이익 급감 등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하였다.

한편, 조사실은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 및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여 국내 동종 물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고, 국내소비 감소폭보다 동종물품 판매량의 감소폭이 더 컸으며, 국내산업의 수출,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검토하였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할 때,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덤핑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 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같은 시점에서 덤핑물품의 수입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덤핑 물품의 수입에 인한 것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다.

VII.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

1. 덤핑률 수준

위원회는 조사실의 덤핑률 산정이 WTO 반덤핑협정 제2.4조, 제6.8조, 동 협정 부속서2,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4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5조의 2, 제17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조사실이 산정한 대로 개별 공급자별 덤핑률을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중국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어 답변서를 제출한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와 ‘텐진 루화,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 및 ‘진하이’에 대하여 각각 3.07%, 3.50%, 2.26%의 개별 덤핑률을 산정한다.

그 밖의 공급자⁷⁷⁾에 대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⁷⁸⁾,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50%의 최종덤핑률을 산정한다.

77) ‘그 밖의 공급자’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및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를 의미하였다.

78)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후략)”

< 대만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어 답변서를 제출한 ‘아로캠 및 그 관계사’에 대하여 7.07%의 개별 덤핑률을 산정한다.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조사에 대응하지 아니한 ‘추엔화’에 대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른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18.52%의 덤핑률을 산정한다.

그 밖의 공급자⁷⁹⁾에 대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⁸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7.07%의 최종덤핑률을 산정한다.

2. 국내산업피해 구제 수준

조사보고서⁸¹⁾에 의하면, 조사실은 덤핑수입의 영향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20년 국내산업인 신청인의 국내 동종물품 영업이익률(xxx%),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등을 기초로 국내 동종물품의 목표판매가격, 덤핑물품의 판매가격 및 덤핑물품의 수입가격(CIF기준)을 각각 산출하였으며, 국내산업 피해구제 수준 산정 대상기간은 최근 1년에 해당하는 2023년으로 하여 79.50%의 산업피해구제 수준을 산정하였다.

79) ‘그 밖의 공급자’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및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를 의미하였다.

80)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후략)”

81) 조사보고서 pp.113-114

위원회는 조사실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해 적용한 산업피해구제 수준 산정방식과 그 산정결과가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⁸²⁾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무역위원회 고시 제2024-4호) 제21조제1항⁸³⁾ 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조사실이 산정한 79.50%의 산업피해구제 수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한다.

3.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

위원회는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공급자 등에 대해 최종덤핑률은 조사대상 공급자별로 2.26% ~ 18.52%를 적용하고, 국내산업피해구제 수준은 79.50%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9.1조⁸⁴⁾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정에 따라 덤핑률과 산업피해구제 수준 중 낮은 것을 적용함에 따라 본건 최종 덤핑방지관세부과 수준을 아래 표와 같이 공급자별로 부과하기로 결정한다.

82)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단일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83)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1조 : ①위원회는 영 제65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율의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산정함에 있어 동종의 국내생산물품의 실제판매가격, 국내생산물품의 목표판매가격, 덤핑수입물품의 실제판매가격 등의 비교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84) WTO 반덤핑협정 제9.1조 :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와 부과되는 반덤핑관세의 세액을 덤핑마진의 전액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그보다 적게 할 것인가의 여부는 수입회원국 당국이 결정한다. 모든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부과되는 임의적인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덤핑마진 미만의 관세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경우에는 동 관세는 덤핑마진 미만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종덤핑률 수준과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의 비교 >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최종 덤핑률	국내산업 피해구제 수준	최종 덤핑방지 관세 부과수준
중 국	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형허), Ningbo Yonghua Resin Co., Ltd. (용화) 및 그 관계사 - Henghe (Nanji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형허난징)	3.07%	79.50%	3.07%
	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텐진루화), 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 - Zibo Luhua Hongjin New Material Group Co., Ltd.(쓰보루화) - Fujian Fuhua Luhua New Material Co., Ltd.(푸젠루화) - Shanghai Luhua Chemical Technology Co., Ltd.(상해루화) - Qingdao Yanggu Luhua New Materials Co., Ltd.(청도루화)	3.50%		3.50%
	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진하이)	2.26%		2.26%
	그 밖의 공급자	3.50%		3.50%
대 만	Arochem Corporation(아로켄) 및 그 관계사 - Yuen Liang Industrial & Co., Ltd.(웬량)	7.07%		7.07%
	Chuen Huah Chemical Co., Ltd.(추엔화)	18.52%		18.52%
	그 밖의 공급자	7.07%		7.07%

VIII.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및 관세법 제56조제2항 등 반덤핑 관련 국내외 규정에서는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을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EU·중국 및 인도 등 주요국도 WTO 반덤핑협정과 동일하게 원심 및 재심의 덤핑방지조치 기간을 5년으로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본 의결서 주문과 같이 향후 5년 동안 조사대상공급자별로 2.26% ~ 18.5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무역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2025년 05월 22일

위원장	이재형
상임위원	양병내
위원	조영재
위원	강준하
위원	권현호
위원	윤경애
위원	고준호
위원	현혜정

이재형

양병내

조영재

강준하

권현호

윤경애

고준호

현혜정

적 용 법 령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8조제8호 및 제32조
- 관세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6조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내지 제65조 및 제71조
- WTO 반덤핑협정 제1조 내지 제6조 등

붙 임 자 료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최종보고서

[별지] 피신청인의 주소

< 중국 >

1.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

(1) 형허 (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 2222 Binhai Road, Ningbo Petrochemic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 Zhejiang Province

(2) 용화 (Ningbo Yonghua Resin Co., Ltd.)

: 555 Fengming Road, Xiepu, Ningbo Chemical Industry Zone, Zhejiang Province

(3) 형허난징 (Henghe (Nanji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 168 Liuzuo Road, Changlu Subdistrict, Jiangbei New District, Nanjing

2. 텐진루화,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

(1) 텐진루화 (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 No.233 Jinyuan Road, Dagang, Tianjin Binhai New Area, China

(2) 우한루화 (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 555 Fengming Road, Xiepu, Ningbo Chemical Industry Zone, Zhejiang Province

(3) 쯔보루화 (Zibo Luhua Hongjin New Material Group Co., Ltd.)

: No. 3, Fengbei Road, Zhangdian District, Zibo, Shandong, China

(4) 푸젠루화 (Fujian Fuhua Luhua New Material Co., Ltd.)

: No. 168, Shugang Avenue South, Gulei Town, Zhangpu County, Fujian, China

(5) 상해루화 (Shanghai Luhua Chemical Technology Co., Ltd.)

: No.1525, Pudong Avenue,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China

(6) 청도루화 (Qingdao Yanggu Luhua New Materials Co., Ltd.)

: Room 314-41, 3F, East Office Building, No. 45 Beijing Road, Qianwan Bonded Port Area, Qingdao Pilot Free Trade Zone, Shandong, China

3. 진하이

(1) 진하이 (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

: No.2666 Binhai Road, Ningbo Petrochemic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rea, Zhejiang, China

< 대만 >

1. 아로켄 및 그 관계사⁸⁵⁾

(1) 아로켄 (Arochem Corporation)

: No. 922, Zhongxing Rd., Yanchao Dist., Kaohsiung City 824007, Taiwan

(2) 웬량 (Yuen Liang Industrial & Co., Ltd.)

: No. 922, Zhongxing Rd., Yanchao Dist., Kaohsiung City 824007, Taiwan

2. 추엔화

(1) 추엔화 (Chuen Huah Chemical Co., Ltd.)

: No.365, Daren N. Rd., Gangshan Dist., Kaohsiung City, Taiwan

85) 웬량은 아로켄의 수출관계사로서 생산자이자 판매자인 아로켄을 대표로 하고 웬량은 관계사로 표기하였다.

공개용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최종보고서
(조사번호 : 구제 23-2024-6호)

2025. 5. 22.

무 역 조 사 실

< 목 차 >

I. 조사 개요	1
1. 신청인, 조사대상물품 공급국 및 공급자	1
2. 조사대상물품	3
3.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여부	7
4.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국내산업의 범위	10
5. 석유수지 산업현황 및 수급현황	13
6. 비밀취급 여부 검토	16
II. 덤핑사실 조사	20
1. 덤핑사실 조사대상 공급자 선정	20
2. 덤핑사실 조사경과	20
3.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	23
III. 국내산업의 피해	72
1. 국내산업의 발전(확립)의 실질적 지연 여부	72
2.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	73
가. 덤핑물품의 누적 평가 적용 여부	74
나. 답변서 제출 및 산업피해 분석 대상 국내 생산자	78
다.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79
라. 덤핑물품이 국내동종물품 가격에 미치는 효과	83
마.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87
IV.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101
1.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101
2. 덤핑물품 수입 이외 기타 다른 요인의 영향	104
3. 인과관계 종합 검토	110

V.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111
1. 덤핑률 수준	111
2.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	113
3.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114
VI. 무역위원회가 결정할 사항	116
1. 긍정 판정 시	116
2. 부정 판정 시	117

< 참고자료 >

1. 국내산업피해 조사 경과	118
2. 덤핑사실 조사 경과	120

< 붙임자료 > : 별책

붙임 1. 조사개시 공고문	별책
붙임 2. 공청회 발언요지(신청인측)	별책
붙임 3. 공청회 발언요지(피신청인측)	별책
붙임 4. 공청회 속기록	별책
붙임 5. 공청회 후 의견서(신청인측)	별책
붙임 6. 국내생산자 실사 결과보고서	별책
붙임 7. 조사대상공급자 실사 결과보고서	별책

* 붙임자료 별책 목록에 포함된 이해관계인 발언요지 및 제출의견(공개요약본)은,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7항(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중 비밀취급 자료를 제외한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서면신청 방법 규정)에 따라 공개본을 요청한 이해관계인에게는 이미 제공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에 서면(공문 형식)으로 열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실사결과보고서, 속기록은 비공개

안내 사항

< 비밀취급 자료 관련 >

-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 관세청 수입통계자료, 정보유통기업의 유료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등의 자료는 환산값과 증감률을 표시함
 - 환산값은 예시와 같이 기준 연도 값을 설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을 반영한 환산값을 제시하되, 기준 연도 값과 환산값은 본문과 표에 "12,345"(기울임, 밑줄)의 형태로 표시함

※ 예) 기준 연도 값 : 1,000

- '가격 차이' 자료는 공개될 경우, 상대방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수치를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 시장점유율, 국내 동종물품 가동률, 물량 비중, 원가구성비 등 비율(%)로 표시되는 자료는 수치를 공개하지 않되, 변동폭(%p로 표시)을 표시함

※ 예) 10.0% → 15.0%로 증가한 경우 5.0%p로 표시

- 기준 연도 값이 음의 부호('-')인 경우에는 '적자'로 표시하고 다음 연도에는 '적자 확대', '흑자 전환' 등으로 표시함

I. 조사 개요

1. 신청인, 조사대상물품 공급국 및 공급자

가. 신청취지

- '24.5.31. 코오롱인더스트리(주)¹⁾는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Petroleum Resin)의 덤핑수입(신청인 주장 덤핑률 : 15.52~18.52%)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함

나. 신청인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 대리인: 법률사무소 학훈(변호사 김학훈)
 - 우리회계법인(공인회계사 한동운)

(‘23년 기준)

구분 \ 신청인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회사설립 연 · 월 · 일		2010.1.1.
대표자		김 영 범
주 소	본사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 (마곡동) 코오롱 One&Only타워1
	공장	울산, 여수, 대산 등
자본금		151,435백만원
매출액	총매출액	3,547,623백만원
	동종물품	xxx백만원
주요 생산제품		석유수지, PET필름, 타이어코드 등
종업원수		xxx명

1) 본보고서에서 회사명 앞이나 뒤의 (주)는 주식회사의 약어임

다. 조사대상물품 공급국 및 공급자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신청인 제 덤 핑 률	대 응 여 부
중국	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형허)	15.52%	대응
	Ningbo Yonghua Resin Co., Ltd. (용화)		대응
	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텐진루화)		대응
	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우한루화)		대응
	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 (진하이)		대응
대만	Yuen Liang Industrial & Co., Ltd. (웬량)	18.52%	대응
	Chuen Huah Chemical Co., Ltd. (추엔화)		미대응

○ 조사대상공급자의 대리인

< 중국 >

-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 텐진루화,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 진하이 : 법률사무소 신아(변호사 심규황), 주식회사 리인타(회계사 김동준)

< 대만 >

- 웬량 : 법률사무소 신아(변호사 심규황), 주식회사 리인타(회계사 김동준)
- 추엔화 : 법무법인 태평양(이광민 변호사), 정동회계법인(김창훈 회계사)

라. 조사대상기간

- 덤핑사실 조사대상기간 : '23. 1. 1.부터 '23. 12. 31.까지
- 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 '20. 1. 1.부터 '23. 12. 31.까지

2. 조사대상물품

○ 품명 :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 관세품목분류(HSK) : 3911.10.1000
- 관세율 : 기본관세율 8.0%, 한중 FTA 협정세율 : 0%

- 조사범위 : 나프타(Naphtha)의 열분해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올레핀²⁾이나 디올레핀³⁾을 함유한 C₅⁴⁾ 및 C₉⁵⁾ 유분(溜分) 또는 디사이클로펜타디엔(DCPD)⁶⁾을 단일 또는 혼합 투입하여 중합⁷⁾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수지임. 다만 연화점(녹는점)이 130℃ 이상인 C₉ 석유수지는 조사대상물품에서 제외함
- 물리적 특성 및 구성요소 : 석유수지는 점·접착 특성을 보여 각종 고무제품 및 점·접착제 제조에 적용되어 점·접착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우수한 열안전성, 내후성 및 용해성의 특성을 보임. 석유기반 원료인 지방족(C₅), 방향족(C₉), DCPD(디사이클로펜타디엔) 등의 혼합물로 중합 및 수소화 반응을 통해 얻어지는 제품을 구상화한 물품임
- 용도 : 핫멜트 점착제, 핫멜트 접착제, 타이어, 테이프 라벨, 도료 & 잉크, 도로용 페인트 등에 적용됨
 - 핫멜트 점착제⁸⁾ : 주로 유아 또는 성인용 기저귀 및 생리대에 적용되는 점착제의 점착력, 열안정성, 색상, 흡수(Wetting)성, 점도 조절을 위해 적용됨
 - 핫멜트 접착제⁹⁾ : 각종 포장재, 목공, 신발, 자동차 및 건축용에 적용되는 점착제에 작업성, 점착력, 피착재 침투력, 색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적용됨

2) 올레핀이란 천연가스나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불포화 탄화수소를 의미함
 3) 디올레핀이란 탄소의 이중결합된 화학물을 의미하며, 다이올레핀(diolefin)이라고도 불림
 4) 나프타(Naphtha) 크래킹시 추출되는 기초유분 중 다섯 개의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임
 5) 나프타(Naphtha) 크래킹시 추출되는 기초유분 중 8~9 개의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임
 6) 디사이클로펜타디엔은 C₅ 원료를 정제하여 얻을 수 있는 단량체인 사이클로펜타디엔(CPD : cyclopentadiene)을 유기반응(Diels-Alder reaction)을 통해 이량화시킨 화학물임
 7) 중합(Polymerization)이란 어떤 화합물 분자가 2개 이상 결합하여 분자량이 보다 큰 새로운 화합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뜻함(즉, 고분자를 만드는 과정)
 8) 점착제란 라벨, 테이프, 포스트잇처럼 쉽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물질을 뜻함
 9) 점착제란 점착제(본드)나 풀처럼 고체 상태로 변해 강한 점착력을 부여하는 물질을 뜻함

- 타이어 : 타이어의 트레드(타이어가 노면에 접하는 면)에 적용되는 고무와의 상용성이 우수하며, 트레드의 가공성, 회전 저항, 젖은 노면의 제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용됨
- 테이프 라벨 : 포장용 OPP 테이프부터 마스킹·양면·면천·덕트 및 PVC 절연 테이프 등에 적용되어 폴리머의 탄성도 조절 및 점·접착력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용됨
- 도료 & 잉크 : 발수성, 접착력, 유연성을 위해 선박용·바닥용·방수페인트 등에 적용됨
- 도로용 페인트 : 내후성, 마모성, 작업성, 바인더 역할 등을 위해 도로용 페인트에 적용됨

○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

- ① 전처리공정(Fractional Distillation) : 석유 정유공정에서 생산되는 C5, C9 계열의 유분을 특정 온도, 압력 등의 조건에서 정제하여 중합반응에 사용되는 모노머(Monomer)¹⁰⁾를 생산하는 공정임
- ② 중합 공정(Polymerization) : 중합을 위한 모노머와, 중합 용제 등을 투입한 후 촉매, 온도, 반응 시간 등의 조건을 통해 원료를 합성하는 공정으로 촉매 중합과 열 중합의 방식이 있음
 - 촉매 중합 : Lewis acid 촉매¹¹⁾를 기반으로 적합한 온도와 압력을 통해 석유수지를 중합하는 방법
 - 열중합 :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디엘스-알더 라디칼¹²⁾ 반응으로 석유수지를 중합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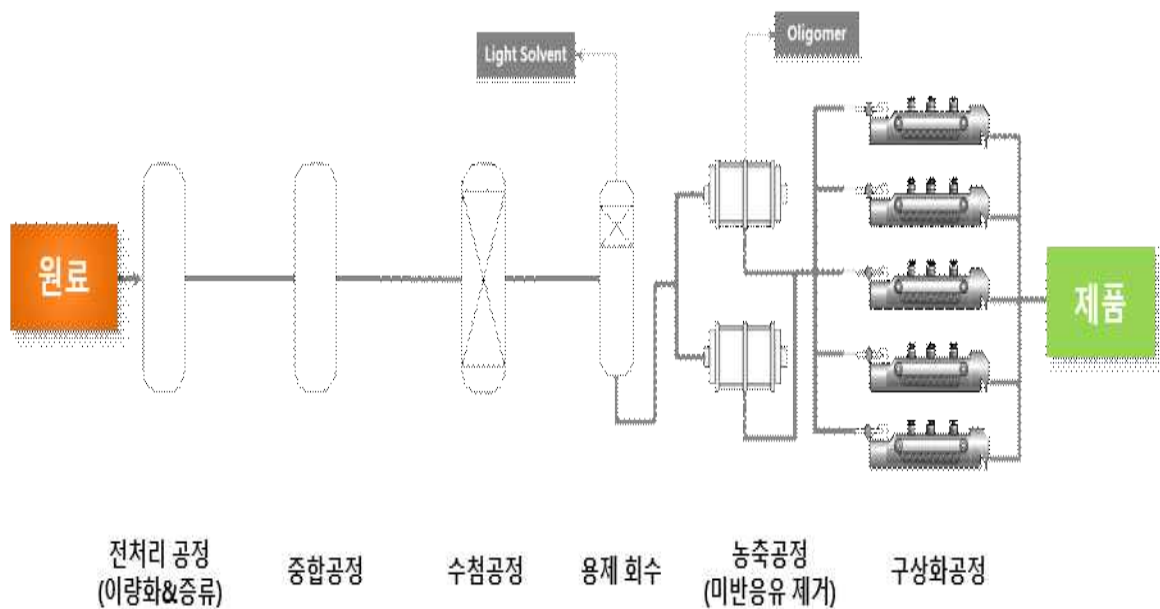
10) 모노머(Monomer)란 고분자화합물을 구성하는 단위가 되는 분자량이 작은 물질이며, 다른 이름으로 단량체라고 불리고 있음. 결합된 분자의 수에 따라 2개는 이량체(dimer), 3개는 삼량체(trimer), 4개는 사량체(tetramer)라고 함. 여러 개의 분자가 결합된 것은 Oligomer라 함.

11) Lewis acid 촉매란 전자 쌍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물질로 유기 화합물 합성 및 촉매 반응에서 쓰이며, 화학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역할을 함. 예로는 AlCl₃, BF₃ 등이 있으며 이러한 촉매는 탄소-탄소 결합, 폴리머화, 환원 및 산화 반응 같은 다양한 유기 화합물 합성에 사용됨.

12) 디엘스-알더(Diels-Alder) 반응은 탄소로 이루어진 고리형 분자를 만드는 방법으로 육각형 구조의 탄소-탄소 결합을 만들 수 있으며 가열하는 과정 외에 다른 과정이 불필요하여 유기 합성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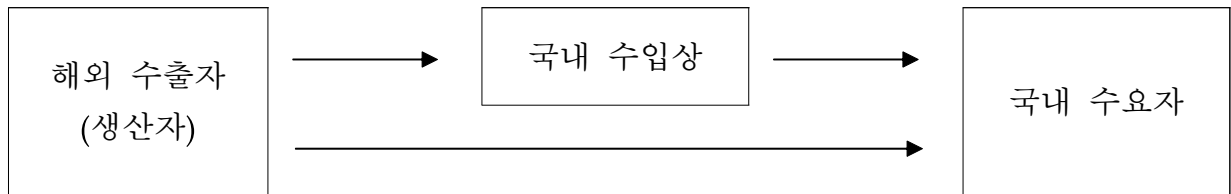
- ③ 수소 첨가 공정(Hydrogenation) : 중합공정에 원재료 투입시 수첨용제를 혼합시킨 후 고온/고압의 조건에서 수소를 첨가하는 반응을 진행하여 수소를 첨가하는 공정
- ④ 미반응유 회수 공정(Recovery of Solvent) : 진공 감압을 통해 올리고머(Oligomer¹³⁾) 및 중합 용제¹⁴⁾ 등의 미반응유를 회수하는 공정
- ⑤ 구상화 공정(Pelletizing) : 피드 펌프를 통해 일정한 압력으로 중합품을 분사시켜면서 동시에 냉각시켜 반구형 형태의 고형 수지를 생산하는 공정
- ⑥ 포장(Packing) : 구상화된 수지는 Auto Packer를 통해 계량 후 포장 Bag에 충전 및 포장

< 제조공정 >



- 13) 올리고머(Oligomer)는 소중합체라고도 하며, 분자량이 대략 1,000 이하의 것을 의미함. 중합 정도가 높은 고분자 화합물 같은 수지상(樹脂狀) 물질이 아니며, 보통의 유기물과 마찬가지로 증류·분리할 수 있고 용액으로 만들 수 있음
- 14) 중합 용제는 모노머들이 폴리머화됨에 있어 중합 반응을 촉진하거나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화합물을 의미함

- 유통경로 : 조사대상물품은 국내 수입상이 해외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국내 수요자가 직접 해외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있음



3.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여부

< 검토할 사항 >

-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또는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조사대상물품과 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의 범위를 정함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 ① 영 제59조제4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가. 품명 및 조사범위 : 조사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함

나. 물리적 특성 등

-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물리적 특성, 용도 및 구성요소가 동일 또는 유사함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 비교>

구분	C5			C9					DCPD			
국가	중국	중국	한국	중국	중국	대만	대만	한국	중국	중국	대만	한국
생산자	Henghe	Luhua	Kolon	Henghe	Luhua	FUCC	Yuan Liang	Kolon	Henghe	Luhua	Idemitsu	Kolon
모델명	HHC-1100	A5100Z	A-1100	HHP-1205	L-1120	SK-120	YL-120M	P-120	HHD-1100	HD-1110	S-110	SU-110
녹는온도	100	97~104	100	120	115~125	120±5	120±5	120	110	110~119	110	112

* 자료 : 조사신청서

- (수입자 (주)위드텍 주장) 국내제품(쿠마론수지) 생산중단으로 인하여 대만 Yuen Liang社의 C9제품(모델명 SK-100)을 수입하였다고 주장(수입자 답변서)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원료부족으로 쿠마론수지¹⁵⁾ 생산을 중단하였으나, (주)위드텍이 사용하는 대만 Yuen Liang社의 C9제품(모델명 SK-100)은 신청인이 생산하는 C9제품(모델명 P-90HS 또는 P-90I)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
- (조사실 검토) 신청인이 생산중단한 쿠마론수지는 조사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주)위드텍이 사용하는 대만산 C9제품(SK-100)은 신청인이 생산하는 C9제품(P-90HS 또는 P-90I)으로 대체가능한 것으로 판단됨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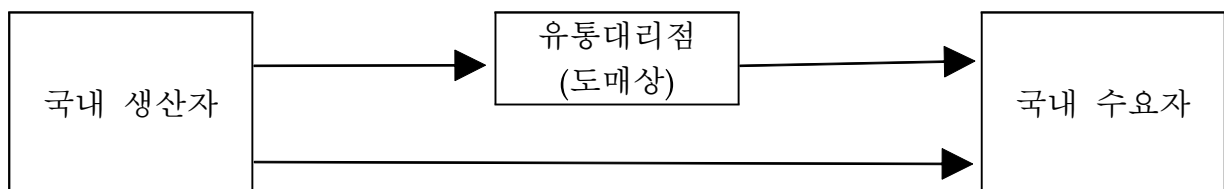
다. 제조공정

-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제조공정은 동일 또는 유사함

라. 유통경로

-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모두 최종수요자에 대한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되거나, 대리점 또는 수입자 단계를 거쳐서 최종수요자에게 유통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유통경로가 유사함

<국내생산품의 유통경로>



15) 쿠마론은 석탄을 고온 건류할 때 생기는 콜타르에 포함된 무색의 유분으로 쿠마론 수지는 조사대상 품목이 아님. 신청인은 쿠마론수지를 2015년까지 생산하였음

16) 조사실은 신청인의 의견서를 열람할 수 있고, 반박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주)위드텍에 이메일로 알렸으나, (주)위드텍의 열람요청이나 반박의견제출은 없었음

마. 품질 및 소비자 평가

-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을 대체사용 가능하고, 품질 및 소비자 평가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중국측¹⁷⁾은 국내생산자가 국내생산품이 조사대상물품과 비교해 품질이 뛰어나다고 주장¹⁸⁾한 바, 국내생산품은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공청회 발언요지를 통해 주장하였으나,
- 공청회(25.3.20.) 시 질의응답에서 중국측은 국내생산품과 조사대상물품의 품질 차이가 없다고 답변함

바. 종합 검토

- 동종물품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소비자의 평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말하는 바, 국내생산품은 조사대상물품과 물리적 특성, 용도, 제조공정, 유통경로, 품질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상업적으로 대체가능한 동종물품으로 판단됨

17) 본 보고서에서 중국측은 중국 조사대상공급자인 형허, 용화, 텐진루화, 우한루화, 진하이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Commercial Legal Services Center, 이하 “중국무촉위”라 함)를 뜻함. 이들의 대리인은 법률사무소 신아, (주)리인타로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중국무촉위는 조사대상공급자인 중국의 형허, 용화, 텐진루화, 우한루화, 진하이 등 8개사의 위임장을 제출함

18) 신청인은 국내생산품이 중국산과 비교 시 품질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동종물품 범위 내에서의 차이라는 입장임

4.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국내산업의 범위

가.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

1) 국내생산자

- 국내생산자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한화솔루션(주) 2개사임

(’23년 기준 : 톤, %)

국내생산자	생산량(톤)	비중(%)	조사신청 신청여부	답변서 제출여부
코오롱인더스트리(주)		<u>70% 대</u>	찬성	제출
한화솔루션(주)			무응답	미제출
총계		100.0		

* 자료 : 품목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의견서, 국내생산자 답변서

2) 수입자

- xxx, xxx, xxx, xxx, xxx 등이 있음

3) 수요자

-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등이 있음

나. 국내산업의 범위

< 검토할 사항 >

-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확인
- 국내생산자가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 국내생산자가 수입자이거나, 외국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에서 제외할 수 있음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4항 및 제5항
 - ④ 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 ⑤ 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
 - ② 영 제59조제4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영 제59조제6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 ③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내생산자

- 해당 산업의 주무부처(화학산업팀)¹⁹⁾에 확인 결과,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자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한화솔루션(주) 총 2개사임

2)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 조사실은 모든 국내생산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코오롱인더스트리(주) 1개사가 답변서를 제출함
- 답변서를 제출한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조사신청일로부터 6월 이내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고,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및 수입자와 특수관계도 없으므로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됨
-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70%대에 해당하여 상당 부분을 점하므로, 국내산업 피해유무 조사에서 “국내산업”은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동종물품 생산사업으로 함

19) 조사신청 당시 산업통상자원부(화학산업팀) 의견 참조.

5. 석유수지 산업현황 및 수급현황

가. 개관

- 나프타 열분해공정에서 산출되는 C5, C9 등의 기초 유분을 중합하여 제조한 수지로서, 주로 점·접착제 원료, 타이어 및 페인트 등의 첨가제로 사용됨
 - 석유수지는 점·접착제의 원료 및 타이어, 페인트, 잉크의 첨가제로 사용됨
- 석유수지는 원유를 기초로 하므로 석유화학 전·후방 산업의 가격 변동 및 공급 안정성에 영향을 받음
- 석유수지는 점·접착 특성을 보여 각종 고무 제품 및 점·접착제 제조에 적용되어 점·접착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각종 고무 제품의 가공성을 향상시킴

나. 세계시장 동향

- Argus 보고서²⁰⁾에 의하면 전 세계 석유수지의 생산능력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생산량보다 생산능력의 증가폭이 더 커서 가동률은 점차 감소함
 - 전 세계 석유수지의 생산능력은 '20년 xxx천톤에서 '23년 xxx천톤으로 증가하고, 아태지역의 생산능력은 '20년 xxx천톤에서 '23년 xxx천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생산능력은 '20년 xxx천톤에서 '23년 xxx천톤으로 증가하여, 전 세계 대비 중국 비중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7.9%p 증가함
 - 전 세계 석유수지의 생산량은 '20년 xxx천톤에서 '23년 xxx천톤으로 증가하고, 아태지역의 생산량은 '20년 xxx천톤에서 '23년 xxx천톤으로 증가함

20) Argus는 독립적으로 연료, 발전, 화학, 농업비료 철강 산업 등의 시장 및 가격조사를 하는 전문 조사 업체로서 영국 런던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전세계에 30개의 사무소와 1,400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Argus는 160여개국의 제조사, 무역회사 및 정부에서 현황분석, 경영위험 분석, 장단기 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https://www.argusmedia.com/en>).

- 이에 따라, 전 세계 석유수지 설비 가동률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7.1%p 하락하고, 아태지역의 석유수지 설비 가동률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8.1%p 하락함

< 전 세계 및 중국의 석유수지 생산능력 >

(단위 : 천톤, %, %p)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²¹⁾
세 계	생산능력	<u>1,000</u>	<u>1,063</u>	<u>1,170</u>	<u>1,209</u>	6.5
	생산량	<u>1,000</u>	<u>1,067</u>	<u>1,087</u>	<u>1,088</u>	2.8
	가동률					-7.1
아 태 지 역	생산능력	<u>1,000</u>	<u>1,083</u>	<u>1,227</u>	<u>1,288</u>	8.8
	생산량	<u>1,000</u>	<u>1,094</u>	<u>1,113</u>	<u>1,142</u>	4.5
	가동률					-8.1
중 국	생산능력	<u>1,000</u>	<u>1,117</u>	<u>1,308</u>	<u>1,393</u>	11.7
	비중					7.9

* 자료 : Argus 석유수지 글로벌 수요공급의 분석

다. 국내산업 동향

- 국내산업은 '77년 (주)코오롱에서 시작되었으며, 한화솔루션은 '19년 11월 석유수지 상업생산을 개시함
- 후방산업은 주원료인 나프타를 열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산업으로 주요 기업은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루션, 여천 NCC, 한화토탈에너지스 등이 있음
- 전방산업은 점·접착제, 페인트, 잉크 및 타이어 등을 생산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이 혼재되어 있음

21) 본보고서 '증감률' 항목에서 가동률, 시장점유율 등 비율에 대한 수치는 증감률이 아니라 비율의 변화폭(%p)을 표시함

라. 국내시장 수급현황

- 국내의 석유수지 수요는 '23년 기준으로 xxx톤이며, 이중 국내소비가 xxx톤으로 xxx%, 국내생산품 수출이 xxx톤으로 xxx%를 차지
- 국내의 석유수지 공급은 '23년 기준으로 xxx톤이며, 이중 국내공급이 xxx톤으로 xxx%, 외국산 제품 수입은 xxx톤으로 xxx%를 차지

(단위 : 톤, 백만원, %)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수 요	국내소비 (국산품 내수 + 총수입)	물량	<u>1,000</u>	<u>1,025</u>	2.5	<u>884</u>	-13.8	<u>903</u>	2.2	-3.3
		금액	<u>1,000</u>	<u>1,052</u>	5.2	<u>1,033</u>	-1.8	<u>986</u>	-4.6	-0.5
	수출 (국산품 수출)	물량	<u>1,000</u>	<u>1,053</u>	5.3	<u>979</u>	-7.0	<u>861</u>	-12.1	-4.9
		금액	<u>1,000</u>	<u>1,107</u>	10.7	<u>1,245</u>	12.5	<u>978</u>	-21.5	-0.7
합 계		물량	<u>1,000</u>	<u>1,047</u>	4.7	<u>957</u>	-8.6	<u>872</u>	-8.9	-4.5
		금액	<u>1,000</u>	<u>1,095</u>	9.5	<u>1,200</u>	9.6	<u>979</u>	-18.4	-0.7
공 급	국내공급 (국산품 내수 + 수출)	물량	<u>1,000</u>	<u>1,042</u>	4.2	<u>945</u>	-9.3	<u>832</u>	-12.0	-6.0
		금액	<u>1,000</u>	<u>1,093</u>	9.3	<u>1,197</u>	9.5	<u>948</u>	-20.8	-1.8
	수입 (총수입)	물량	<u>1,000</u>	<u>1,078</u>	7.8	<u>1,040</u>	-3.5	<u>1,152</u>	10.7	4.8
		금액	<u>1,000</u>	<u>1,116</u>	11.6	<u>1,232</u>	10.4	<u>1,253</u>	1.7	7.8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6. 비밀취급 여부 검토

< 검토할 사항 >

- 비밀취급 요청한 자료가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거나 요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비밀취급 요청한 자료가 공개되는 경우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비밀취급 요청인이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세한 요약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세법시행규칙 제15조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관련 법규

○ WTO 반덤핑협정 제6.5조

성격상 비밀인 정보 (예를 들어 누설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되거나 정보 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된 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아니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5.1조

당국은 비밀정보를 제공한 이해당사자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토록 요청한다. 이러한 요약문은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가 요약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요약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진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5.2조

당국이 비밀보호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고 정보의 제공자가 그 정보의 공개나 일반화된 또는 요약된 형태로 발표하는 것을 인가할 용의가 없는 경우 이러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사실이 적절한 출처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

가. 비밀취급 요청 서류

1) 이해관계인 제출서류

- (신청인) 조사신청서, 국내생산자 답변서, 의견서 등
- (피신청인) 공급자 답변서, 의견서 등
- (이해관계인) 수입자 답변서, 수요자 답변서, 의견서 등

2) 정부 서류

- 본 조사보고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통계자료 등

나. 이해관계인 제출서류의 정당한 사유 제출 여부

- (신청인)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음
- (피신청인)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음
- (이해관계인)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음

다. 비밀취급 요청 자료 공개시 제출자 및 이해관계인 이익의 침해 우려 여부 등

- (신청인) 생산현황 및 생산능력, 판매 및 재고현황, 판매가격, 매출액 및 영업이익, 제조원가, 고용 및 임금,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원재료 가격 등 공표되지 않은 내부 회계자료와 기타 거래처 정보, 유료 구매 자료 등은 영업상의 비밀 및 정보공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국내생산자의 경쟁력 저하 또는 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요청함
- (피신청인) 생산현황, 판매 및 재고현황, 손익 및 재무상태, 제조원가, 연구개발 및 투자, 고용 및 임금현황 등 공표되지 않은 내부 회계자료와 기타 거래처 정보 등은 영업상 비밀 및 정보공개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피신청인에게 영업상 불이익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를 요청함
- (이해관계인) 매출액, 수입실적, 통관비용, 판매실적, 가동률, 재고량, 거래업체 등 자료를 영업상 비밀자료로서 비공개 요청했으며, 해당 자료에 대해 비공개본 및 공개본을 제출하였음
- (조사실 검토) 조사실은 비밀취급 요청자료는 공개될 경우 경쟁자들이 해당 정보를 직접 영업에 활용하는 등 자료 제출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거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생산자, 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이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함
 - 제출된 자료 중 판매현황, 가격, 원가, 기타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등은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비추어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함

라. 비밀취급 자료의 요약서 제출 여부

- 비밀취급 요청 서류를 제출한 자들은 모두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한 합리적 이해가 가능한 수준의 상세한 공개본을 제출하였음
- 특히, 국내생산자는 공개본에 비밀 취급 요청한 정보(조사대상물품의 국내소비 점유율, 수입물량, 수입금액, 신청인의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판매 등)에 대해 조사대상기간 지수화된 자료 내지 증감률 정보를 제공하고 그 추세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였음

마. 기타

- 수입 관련(물량, 금액, 거래내역, 거래처 등) 자료는 개별기업의 영업비밀(무역거래) 자료로 공개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함

II. 덤핑사실

1. 덤핑사실 조사대상공급자 선정

-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²²⁾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²³⁾에 따라, 덤핑사실 조사대상기간('23.1.1.~'23.12.31.) 동안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하였음
- 조사대상공급자로 중국은 '형허', '용화', '텐진루화', '우한루화', '진하이' 등 5개사가 선정²⁴⁾되었으며, 대만은 '웬량', '추엔화' 등 2개사가 선정²⁵⁾되었음
- 선정된 모든 조사대상공급자는 조사참여 신청기한('24.8.2.~8.23.) 내 조사참여신청서를 제출('24.8.21.~8.23.)하여, 조사에 대한 참여 및 협조 의사를 표명하였음

2. 덤핑사실 조사경과

- 조사실은 '24.8.2. 덤핑 조사를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한을 정하여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음(답변기한 : '24.9.13.)
- 중국 모든 조사대상공급자는 '24.9.5에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²⁶⁾하였고, 조사실은 연장 사유를 검토하여 당초 '24.9.13.이었던 답변기한을 진하이는 '24.9.20.로 용화 및 형허와 텐진루화 및 우한루화는 '24.9.23.로 각각 7일 및 10일 연장하고 이를 통보하였음('24.9.6)
- 모든 중국 조사대상공급자는 연장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

22) WTO반덤핑협정 제6.10조

- 관련된 수출자가 너무 많을 경우 당국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을 사용하여 검사를 합리적인 수로 제한할 수 있음(수출량의 가장 큰 비율 등).

23)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공급자의 수 또는 물품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 포함)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24) 선정된 5개 조사대상공급자의 조사대상물품 수출비중은 중국의 조사대상물품 대한국 수출물량의 xxx%에 해당함

25) 선정된 2개 조사대상공급자의 조사대상물품 수출비중은 대만의 조사대상물품 대한국 수출물량의 xxx%에 해당함

26) xxx

- 대만 조사대상공급자 중 웬량은 '24.9.5에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²⁷⁾하였고, 조사실은 연장 사유를 검토하여 당초 '24.9.13.이었던 답변기한을 '24.9.20.로 연장하고 이를 통보하였음('24.9.6)
- 대만 조사대상공급자 웬량은 연장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
- 다만, 대만 조사대상공급자 중 추엔화²⁸⁾는 조사참여신청은 하였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에 대응하지 않았음
- 조사실은 '24.10.21. 모든 중국 조사대상공급자에게 1차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음 (답변기한 : '24.10.28.)
- 모든 중국 조사대상공급자는 기한 내 보충질의 답변서를 제출함
- 조사실은 '24.10.28. 중국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에 2차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음 (답변기한 : '24.11.4.)
-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는 기한 내 보충질의 답변서를 제출함
- 조사실은 '24.11.6. 대만 아로캠 및 관계사에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음 (답변기한 : '24.11.13.)
- 대만 아로캠 및 관계사는 기한 내 보충질의 답변서를 제출함
- 조사실은 예비판정 전 WTO 반덤핑협정 제6.2조에 따라 이해관계인회의를 개최('24.12.17., 온라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된 이해관계인이 덤핑조사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무역위원회는 조사실 예비조사 결과 등 토대로 제455차 회의를 개최('24.12.19.)하여, 조사대상공급자별 예비덤핑률²⁹⁾을 심의·의결함

27) xxx

28) 대만의 추엔화는 석유수지를 수출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조사대상공급자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24.8.19.)하였으나, 조사실은 추엔화가 한국 관세청의 수입통관정보에 따라 선정되었으므로 조사대상 제외요청을 수용할 수 없음을 검토 회신('24.9.2.)하였음

29) 예비덤핑률 : (중국)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 7.55%, 텐진루화,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 5.66%, 진하이 : 4.45%,

- 조사실은 조사대상공급자의 자료 등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에 대응한 모든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실사 안내서 및 질의서를 '25.3.4.과 '25.3.12. 두차례 나눠 송부함
- 모든 조사대상공급자가 현지 실사 동의서 및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1개사당 2~3일간 실사를 진행함
 - 텐진루화,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25.3.13.~3.14.), 대만 아로켄 및 그 관계사('25.3.17.~3.18.)
 -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25.3.24.~3.26.), 진하이('25.3.27.~3.28.)
- 실사 종료후, 실사 결과에 대해 각 조사대상공급자에게 통지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함('25.4.15.~4.22.)
- 조사실은 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덤핑률(안)을 산정하고, WTO 반덤핑협정 제6.2조, 제6.9조 등의 규정에 따라 그 산정 내역 등을 각 조사대상공급자, 신청인 등에게 통보('25.4.23.)하고 의견 제출기회('25.4.23.~4.30.)를 제공함
- 조사에 대응한 중국 및 대만의 모든 조사대상공급자와 신청인은 최종덤핑률(안)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인 회의('25.5.2.)에 참석하지 않았음

3.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

< 중국 >

가. 형허(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용화(Ningbo Yonghua Resin Co., Ltd.) 및 그 관계사

1) 공급자 개요

- 형허(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용화(Ningbo Yonghua Resin Co., Ltd.) 및 그 관계사(이하 “피신청인”)는 중국 저장성 및 난징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자이자 수출자임
- ‘형허’, ‘용화’ 및 관계사 ‘형허난징’은 동일지배주주 관계사로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 및 지분관계 등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바, 단일경제실체(single economic entity)로 간주함³⁰⁾

2) 판매현황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경로>

- 내수판매
- 대한민국 수출

30)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 개요

공급자명	최대주주* 지분율	선정여부	조사대상물품 관련 활동

*최대주주 :

-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총매출액은 xxx백만RMB(약 xxx조원)이며 조사대상물품 매출액은 xxx백만RMB(약 xxx조원), 대한민국 수출액은 xxx백만RMB(약 xxx억원)임³¹⁾
-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중국 내수시장, 한국 및 제3국에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하였음
- 내수시장에 약 xxx천톤을 판매하였으며, 한국에 약 xxx천톤을 수출하였음

3) 답변서 제출 현황

- '24. 8. 2.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4.9.13.)
- '24. 8. 23.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
- '24. 9. 5. : 답변기한 연장신청
- '24. 9. 6. : 답변기한 연장 통보('24.9.13. → '24.9.23., 10일 연장)
- '24. 9. 23. : 답변서 접수
- '24. 10. 21. : 1차 보충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4. 10. 28.)
- '24. 10. 28. : 보충질의서 답변서 제출
- '24. 10. 28. : 2차 보충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4. 11. 4.)
- '24. 11. 4. : 보충질의서 답변서 제출
- '24. 12. 10. : 예비덤핑률 산정 관련 이해관계인회의 개최 통보
- '24. 12. 17. : 예비덤핑률 산정 관련 이해관계인회의 개최(온라인)³²⁾
- '25. 3. 12. : 실사 안내서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5.3.20.)

31) 피신청인 판매 개요

(백만RMB, 천MT)						
구분	총매출액	조사대상물품 매출액	대한국 수출액	생산	내수	한국수출

32) xxx

- '25. 3. 24. ~ 3. 26. :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 실사
- '25. 4. 15. ~ 4. 22 : 실사 결과 통보 및 의견 접수
- '25. 4. 23. ~ 4. 30. : 최종 덤핑률(안) 산정내역 통보 및 의견수렴
- '25. 5. 2. : 최종덤핑률(안) 산정내역 관련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³³⁾

4) 답변서 검토

-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수판매 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검토함
 - 조사실은 두 차례 보충질의를 통해 제조원가, 주요 투입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수출과 내수 거래건의 증빙자료, 직접재료비 주요 요소 배분 방법 등에 대해 추가 질의 및 증빙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함
- 아울러, '25.3.24.~3.26. 동안 실사를 진행하여 제출된 답변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추가 상세정보를 확인하였음

5) 자료의 사용

-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실사에 대응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및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최종덤핑률을 산정함
- (제조원가) 다만, 용화가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주요투입요소(피페틸렌) 자료에서 관계사 공급자명과 공급사의 COP가 불일치함이 발견되어, 다른 조사대상공급자 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사(쓰보 루화)의 COP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피신청인의 제조원가를 상향 조정함

33)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최종덤핑률(안)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인 회의('25.5.2.)에 참석하지 않았음

-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합리적인 기간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등에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에 따라 질의서 송부시,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출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함
-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판정을 하는 경우,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한 다른 조사대상공급자 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사의 COP는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이며, 보충 질의를 통해 검증하였음
- 또한,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은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답변자료를 부인하고 보충 질의에서 검증한 다른 조사대상공급자 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사의 COP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용화의 제조원가를 22.32% 상향 조정함
- (신용기간) 또한, 원답변서의 입금일자와 보충질의에서 제출된 수출 입금 증빙일자 자료와의 불일치가 발견됨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전체 수출 거래건중 상위 10개의 평균 신용기간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함
-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합리적인 기간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등에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에 따라 질의서 송부시,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출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함
-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판정을 하는 경우,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한 조사대상공급자의 수출 신용기간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이며, 보충 질의를 통해 검증하였음
- 또한,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은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답변자료를 부인하고 조사대상공급자의 전체 수출 거래건 중 상위 10개의 평균 신용기간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함
- (판매관리비) 아울러,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와 관련이 없는 영업외수익 등은 제외함

6) 물품구분기준

-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 구성방법으로 ①등급(1=Prime, 2=Non-prime), ②주요구성요소(1 = C5, 2 = C9, 3 = 디싸이클로펜타디엔(DCPD), 4 = 혼합), ③수소첨가 여부, ④녹는 온도(1 = ~ 89℃, 2 = 90℃ ~ 109℃, 3 = 110℃ ~ 129℃, 4 = 130℃ ~ 149℃, 5 = 150℃ ~)를 제시함
- CCN은 재심사대상물품을 구분하는 물리적 특성들로 구성된 코드로서 조사질의서를 통해 피신청인들에게 제공됨
- * CCN 예시 : Prime등급의 수소가 첨가되지 않은 C5 석유수지(녹는점 100 ℃)인 제품의 CCN은 "1122" 로 표기

- 피신청인은 CCN 안내서를 제공받고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³⁴⁾를 가졌으나, 별도 의견 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 다만, 조사실은 답변서 검토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회사 브로셔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CCN 부여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검토한 결과, 녹는 온도 경계에 있는 PR-110-11 모델의 CCN을 합리적으로 재조정(1223 → 1222) 하였음

7) 정상가격

가) 내수판매 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토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수판매 가격이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을 실시함

(1)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 재판매를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거래건에 대해 최초로 비특수관계자에게 재판매한 가격을 가격산정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검증 불요함

(2)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

- 특수관계자 거래검증을 통과한 CCN에 대하여 단위당 순송장가격과 단위당 생산원가³⁵⁾를 비교함
- 원가미만 판매 물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미만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고, 20%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함

34) 이해관계인은 관보가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 CCN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5) 제조원가에 합리적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금융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단위: MT)

구분	내수판매물량(A)	원가미만 판매물량(B)	원가미만판매비율 ($C=B/A \times 100$)	내수판매자료 사용여부

나) 내수판매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

-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내수판매 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함

-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 결과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내수판매에 대하여 전체물량 및 CCN별 수출물량 대비 5% 미만 여부를 검증함
- 피신청인의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총 내수 판매량은 대한민국 수출량의 5%를 초과한 xxx%로, 전체 물량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 충분함
- CCN별 통상의 내수판매량도 대한민국 수출량의 5% 미만 CCN은 없었음

(단위: MT)

구 분	통상의 내수판매량 ³⁶⁾ (A)	대한국 수출량(B)	비율($C=A/B \times 100$)

36) '통상의 내수판매량'이란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과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을 통과하여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내수판매물량을 의미하며, 내수판매물량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물량과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물량 등을 제외한 물량이 '통상의 내수판매량'임

다) 정상가격의 조정

- 정상가격에서 피신청인의 물류비용, 신용비용, 포장비용을 조정함
 - (물류비용) 내륙운반비, 창고비 등은 예비판정까지 거래건별 배분 기준 및 방식 등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 및 충분한 증빙이 부족하였으나, 실사에서 확인되어 정상가격에서 내륙운반비와 창고비 등 물류비용을 조정함
 - (신용비용) 실제 대금회수일을 추적하여 신용기간을 산정하였는지 여부, 단기차입금 이자율³⁷⁾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 (포장비) 실제 발생한 내수시장 평균 포장비를 판매수량으로 곱하여 산정하여 보고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RMB/MT)

구분	정상가격(A)	조정요소(B)				조정된 정상가격 (C=A-B)
		내륙운반비	창고비	신용비용	포장비	

37) 피신청인의 단기차입금 이자율(xxx%)을 적용하였음

구분	정상가격(A)	조정요소(B)				조정된 정상가격 (C=A-B)
		내륙운반비	창고비	신용비용	포장비	

8) 덤핑가격

가) 덤핑가격의 적용

- 피신청인은 대한국수출 시 비특수관계자인 한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하였으므로 한국에 판매한 실제 수출가격을 적용함

나) 덤핑가격의 조정

- 덤핑가격에서 내륙운반비, 창고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판매수수료 및 포장비용을 조정함

- (내륙운반비, 창고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거래건별 실제 발생금액을 추적하여 보고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조정함
- (은행수수료) 대금회수 증빙에 기재된 은행수수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 (신용비용) 실제 대금회수일을 추적하여 신용기간을 산정하였는지 여부, 단기차입금 이자율³⁸⁾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 (판매수수료) 판매와 관련하여 지불한 수수료의 합계금액과 조건 검토 및 판매수수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조정함
- (포장비) 실제 발생한 수출시장 평균 포장비를 판매수량으로 곱하여 산정하여 보고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RMB/MT)

구분	덤핑가격 (A)	조정요소(B)			조정된 덤핑가격 (C=A-B)
		내륙운반비, 창고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판매수수료, 포장비용	

38) 피신청인의 단기차입금 이자율(xxx%)을 적용하였음

구분	덤핑가격 (A)	조정요소(B)			조정된 덤핑가격 (C=A-B)
		내륙운반비, 창고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판매수수료, 포장비용	

9) 과세가격

-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CIF³⁹⁾ 조건의 물량은 실제 수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적용하고, FOB⁴⁰⁾ 조건의 물량은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더하여 산출한 CIF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함

10) 최종덤핑률

-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피신청인의 최종덤핑률은 3.07%임⁴¹⁾

(단위 : RMB/MT)

구분	대한국 수출량 (KG)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 ×100)	가중평균 덤핑률 (F)

39) Cost, Insurance and Freight.

40) Free on Board.

41) 예비판정 이후 실사 검증 등을 거치면서, 물류비용(내륙운반, 창고 등) 조정요소 인정 등에 따라 최종덤핑률은 예비덤핑률(7.75%) 보다 하락함.

구분	대한국 수출량 (KG)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 ×100)	가중평균 덤핑률 (F)
최종덤핑률							3.07%

* 최종덤핑률은 CCN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나. 텐진루화(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우한루화(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및 그 관계사

1) 공급자 개요

- 텐진루화(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우한루화(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및 그 관계사(이하 “피신청인”)는 각각 중국 텐진(Tianjin)과 후베이성에 소재하고 있으며, 생산자이자 수출자임
- ‘텐진루화’,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들은 동일지배주주 관계사로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 및 지분관계 등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바, 단일경제실체(single economic entity)로 간주함⁴²⁾

2) 판매현황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경로>

· 내수판매

· 대한민국 수출

42) 텐진루화,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 개요

공급자명	관계(지분율)	선정여부	조사대상물품 관련 활동

-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총매출액은 xxx백만RMB(약 xxx조원)이며 조사대상물품 매출액은 xxx백만RMB(약 xxx조원), 대한민국 수출액은 xxx백만RMB(약 xxx억원)임⁴³⁾
-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중국 내수시장, 한국 및 제3국에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하였음
- 내수시장에 약 xxx천톤을 판매하였으며, 한국에 약 xxx천톤을 수출하였음

3) 답변서 제출 현황

- '24. 8. 2.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4.9.13.)
- '24. 8. 23.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
- '24. 9. 5. : 답변기한 연장신청
- '24. 9. 6. : 답변기한 연장 통보('24.9.13. → '24.9.23., 10일 연장)
- '24. 9. 23. : 답변서 접수
- '24. 10. 21. : 1차 보충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4. 10. 28.)
- '24. 10. 28. : 보충질의서 답변서 제출
- '24. 12. 10. : 예비덤핑률 산정 관련 이해관계인회의 개최 통보
- '24. 12. 17. : 예비덤핑률 산정 관련 이해관계인회의 개최(온라인)⁴⁴⁾

43) 피신청인 판매 개요

(백만RMB, 천MT)

구분	총매출액	조사대상물품 매출액	대한민국 수출액	생산	내수	한국수출

44) 피신청인은 '24.12.17. 이해관계인회의에서 예비덤핑률 검토 시간이 부족하고 재계산 등에 불합리함을

- '25. 3. 4. : 실사 안내서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5.3.12.)
- '25. 3. 13. ~ 3. 14. : 텐진루화,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 실사
- '25. 4. 15. ~ 4. 22 : 실사 결과 통보 및 의견 접수
- '25. 4. 23. ~ 4. 30. : 최종덤핑률(안) 산정내역 통보 및 의견수렴
- '25. 5. 2. : 최종덤핑률(안) 산정내역 관련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⁴⁵⁾

4) 답변서 검토

-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보충질의 답변서의 내수판매 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검토함
- 아울러 '25.3.13.~3.14. 동안 현지 실사를 진행하여 제출된 답변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검증하였음

5) 자료의 사용

-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실사에 대응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및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최종덤핑률을 산정함
- (제조원가) 다만, 피신청인이 주요 원재료 중 피페릴렌, DCPD, C5, 수소 일부를 관계사로부터 싸게 구매하였음을 확인하고 비관계사 구매가격, 관계사 COP, 관계사의 비관계사에 대한 판매가격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텐진루화, 쓰보루화, 푸젠루화의 제조원가를 각각 2.6%, 3.3%, 0.5% 상향 조정함
- (판매관리비) 또한, 판매관리비(SG&A)의 경우에는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와 관련이 없는 영업외수익 등은 제외하였음

주장함. 그러나 신청인은 상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피신청인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발생한 이용가능한 자료의 적용 등은 무역위의 조사 재량권에 해당하여, 피신청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함

45)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최종덤핑률(안)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인 회의('25.5.2.)에 참석하지 않았음

6) 물품구분기준

-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 (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 구성방법으로 ①등급(1=Prime, 2=Non-prime), ②주요구성요소(1 = C5, 2 = C9, 3 = 디싸이클로펜타디엔 (DCPD), 4 = 혼합), ③수소첨가 여부, ④녹는 온도(1 = ~ 89℃, 2 = 90℃ ~ 109℃, 3 = 110℃ ~ 129℃, 4 = 130℃ ~ 149℃, 5 = 150℃ ~)를 제시함
- CCN은 재심사대상물품을 구분하는 물리적 특성들로 구성된 코드로서 조사질의서를 통해 피신청인들에게 제공됨
- * CCN 예시 : Prime등급의 수소가 첨가되지 않은 C5 석유수지(녹는점 100 ℃)인 제품의 CCN은 "1122" 로 표기
- 피신청인은 CCN 안내서를 제공받고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⁴⁶⁾를 가졌으나, 별도 의견 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7) 정상가격

가) 내수판매 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토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수판매 가격이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을 실시함

(1)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 피신청인은 특수관계자에게 조사대상물품을 약 xxx톤을 판매하였으나, 특수관계자와의 가중평균 판매가격이 비특수관계자와의 가중평균 판매가격의 xxx%로,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로 사용함⁴⁷⁾

46) 이해관계인은 관보가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 CCN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47) 통상 98~102% 범위인 경우 특수관계 영향을 받지 않은 거래로 판단함.

(2)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

- 특수관계자 거래검증을 통과한 CCN에 대하여 단위당 순송장가격과 단위당 생산원가⁴⁸⁾를 비교함
- 원가미만 판매 물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미만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고, 20%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함
- 원가미만 판매 물량이 100%인 경우에는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58조1항에 따라 구성가격(CV, Constructed Value)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함

(단위: MT)

구분	내수판매물량(A)	원가미만 판매물량(B)	원가미만판매비율 ($C=B/A \times 100$)	내수판매자료 사용여부

48) 제조원가에 합리적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금융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구분	내수판매물량(A)	원가미만 판매물량(B)	원가미만판매비율 ($C=B/A \times 100$)	내수판매자료 사용여부

나) 내수판매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

-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내수판매 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함
-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 결과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내수판매에 대하여 전체물량 및 CCN별 수출물량 대비 5% 미만 여부를 검증함
 - 피신청인의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총 내수판매량은 대한민국 수출량의 5%를 초과한 xxx%로, 전체 물량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 충분함
 - CCN별 통상의 내수판매량도 대한민국 수출량의 5% 미만 CCN은 없었음

(단위: MT)

구 분	통상의 내수판매량 ⁴⁹ (A)	대한국수출량(B)	비율($C=A/B \times 100$)

구 분	통상의 내수판매량 ⁴⁹)(A)	대한국수출량(B)	비율($C=A/B \times 100$)

다) 구성가격 산정

-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 및 충분성 검증 결과 정상 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CCN에 대해 구성가격을 적용함
- 구성가격은 CCN별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및 금융비용과 적정이윤을 합산하여 산출함

(단위: RMB/MT)

CCN	제조원가 (A)	판매관리비 및 금융비용(B)	생산원가 ($C=A+B$)	이윤 (D)	구성가격 ($E=C+D$)

49) '통상의 내수판매량'이란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과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을 통과하여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내수판매물량을 의미하며, 내수판매물량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물량과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물량 등을 제외한 물량이 '통상의 내수판매량'임

라) 정상가격의 조정

- 정상가격에서 피신청인의 물류비용, 신용비용, 포장비용을 조정함
 - (물류비용) 내륙운반비, 창고비 등은 예비판정까지 거래건별 배분 기준 및 방식 등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 및 충분한 증빙이 부족하였으나, 실사에서 확인되어 정상가격에서 내륙운반비와 창고비 등 물류비용을 조정함
 - (신용비용) 실제 대금회수일을 추적하여 신용기간을 산정하였는지 여부, 단기차입금 이자율⁵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 (포장비) 실제 발생한 내수시장 평균 포장비를 판매수량으로 곱하여 산정하여 보고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RMB/MT)

구분	정상가격(A)	조정 요소(B)		조정된 정상가격 (C=A-B)
		내륙운반비, 창고비용	신용비용, 포장비용	

50) 중국 인민은행 단기차입금 이자율(xxx%)을 적용하였음

구분	정상가격(A)	조정요소(B)		조정된 정상가격 (C=A-B)
		내륙운반비, 창고비용	신용비용, 포장비용	

8) 덤핑가격

가) 덤핑가격의 적용

- 피신청인은 대한민국수출 시 비특수관계자인 한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하였으므로 한국에 판매한 실제 수출가격을 적용함

나) 덤핑가격의 조정

- 덤핑가격에서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 비용, 은행수수료, 포장비용을 조정함
-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거래건별 실제 발생금액을 추적하여 보고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조정함
- (신용비용) 실제 대금회수일을 추적하여 신용기간을 산정하였는지 여부, 단기차입금 이자율⁵¹⁾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51) 중국인민은행 산하 중국 외환 거래시스템(China Foreign Exchange Trade System, CFETS)의 미국달러단 기차입금 이자율(xxx%)을 적용하였음

- (은행수수료) 대금회수 증빙에 기재된 은행수수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 (포장비) 실제 발생한 수출시장 평균 포장비를 판매수량으로 곱하여 산정하여 보고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RMB/kg)

구분	덤핑가격 (A)	조정 요소(B)				조정된 덤핑가격 (C=A-B)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포장비용	

9) 과세가격

-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CIF⁵²⁾ 조건의 물량은 실제 수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적용하고, FOB⁵³⁾ 등의 조건의 물량은 CIF 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적용함

52) Cost, Insurance and Freight.

53) Free on Board.

10) 최종덤핑률

-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피신청인의 최종덤핑률은 3.50%임

(단위 : RMB/MT)

구분	대한국 수출량 (MT)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 ×100)	가중평균 덤핑률 (F)
최종덤핑률							3.50%

* 최종덤핑률은 모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다. 진하이(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

1) 공급자 개요

- 진하이(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이하 “피신청인”)은 중국 저장성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자이자 수출자임⁵⁴⁾

2) 판매현황

-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여 직접 내수 및 한국, 제3국 시장에 수출하였음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경로>

· 내수판매

· 대한민국 수출

- 조사대상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생산량은 약 xxx천톤으로 가동률은 약 xxx% 수준임
-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총매출액은 xxx백만RMB(약 xxx조원)이며 조사대상물품 매출액은 xxx백만RMB(약 xxx조원), 대한민국 수출액은 xxx백만RMB(약 xxx억원)임
- 내수시장에 약 xxx천톤을 판매하였으며, 한국에 약 xxx천톤을 수출하였음

54) 피신청인 판매 개요

(백만RMB, 천MT)

구분	총매출액	조사대상물품 매출액	대한민국 수출액	생산	내수	한국수출

3) 답변서 제출 현황

- '24. 8. 2.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4.9.13.)
- '24. 8. 23.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
- '24. 9. 5. : 답변기한 연장신청
- '24. 9. 6. : 답변기한 연장 통보('24.9.13. → '24.9.20., 7일 연장)
- '24. 9. 20. : 답변서 접수
- '24. 10. 21. : 보충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4. 10. 28.)
- '24. 10. 28. : 보충질의서 답변서 제출
- '24. 12. 10. : 예비덤핑률 산정 관련 이해관계인회의 개최 통보
- '24. 12. 17. : 예비덤핑률 산정 관련 이해관계인회의 개최(온라인)⁵⁵⁾
- '25. 3. 12. : 실사 안내서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5.3.20.)
- '25. 3. 27. ~ 3. 28. : 진하이 실사
- '25. 4. 15. ~ 4. 22 : 실사 결과 통보 및 의견 접수
- '25. 4. 23. ~ 4. 30. : 최종덤핑률(안) 산정내역 통보 및 의견수렴
- '25. 5. 2. : 최종덤핑률(안) 산정내역 관련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⁵⁶⁾

4) 답변서 검토

55) 피신청인은 '24.12.17. 이해관계인회의에서 예비덤핑률 검토 시간이 부족하고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및 재계산 등에 불합리함을 주장함. 그러나 신청인은 상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피신청인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발생한 이용가능한 자료의 적용은 무역위의 조사 재량권에 해당하여, 피신청인 의견을 제출할 수 사안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함

56)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최종덤핑률(안)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인 회의('25.5.2.)에 참석하지 않았음

-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원답변서 및 보충답변서의 내수판매 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 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검토함

5) 자료의 사용

-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및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최종덤핑률을 산정함
- (신용기간) 다만, 신용기간의 경우 원답변서의 입금일자와 보충질의에서 제출된 수출 입금증빙일자 자료와의 불일치가 발견됨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전체 수출 거래건 중 가장 긴 신용기간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함
 -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합리적인 기간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등에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에 따라 질의서 송부시,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출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함
 -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판정을 하는 경우,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한 조사대상공급자의 수출 입금증빙일자 자료는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이며, 보충 질의를 통해 검증하였음
 - 또한,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은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답변자료를 부인하고 보충 질의에서 검증한 조사대상공급자의 가장 긴 신용기간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함

- (판매관리비) 또한, 판매관리비(SG&A)는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와 관련이 없는 영업외수익 등은 제외하였음

6) 물품구분기준

-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 구성방법으로 ①등급(1=Prime, 2=Non-prime), ②주요구성요소(1 = C5, 2 = C9, 3 = 디싸이클로펜타디엔(DCPD), 4 = 혼합), ③수소첨가 여부, ④녹는 온도(1 = ~ 89℃, 2 = 90℃ ~ 109℃, 3 = 110℃ ~ 129℃, 4 = 130℃ ~ 149℃, 5 = 150℃ ~)를 제시함
- CCN은 재심사대상물품을 구분하는 물리적 특성들로 구성된 코드로서 조사질의서를 통해 피신청인들에게 제공됨
- * CCN 예시 : Prime등급의 수소가 첨가되지 않은 C5 석유수지(녹는점 100 ℃)인 제품의 CCN은 "1122" 로 표기
- 피신청인은 CCN 안내서를 제공받고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⁵⁷⁾를 가졌으나, 별도 의견 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7) 정상가격

가) 내수판매 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토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수판매 가격이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을 실시함

(1)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57) 이해관계인은 관보가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 CCN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피신청인은 모든 내수판매물량을 비관계사인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2)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

- 특수관계자 거래검증을 통과한 CCN에 대하여 단위당 순송장가격과 단위당 생산원가⁵⁸⁾를 비교함
 - 원가미만 판매 물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미만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고, 20%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함

(단위: MT)

구분	내수판매물량(A)	원가미만 판매물량(B)	원가미만판매비율 ($C=B/A \times 100$)	내수판매자료 사용여부

나) 내수판매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

-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내수판매 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함
-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 결과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내수판매에 대하여 전체물량 및 CCN별 수출물량 대비 5% 미만 여부를 검증함
 - 피신청인의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총 내수판매량은 대한민국 수출량의

58) 제조원가에 합리적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금융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5%를 초과한 xxx%로, 전체 물량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 충분함

- CCN별 통상의 내수판매량도 대한민국 수출량의 5% 미만 CCN은 없었음

(단위: MT)

구 분	통상의 내수판매량 ⁵⁹⁾ (A)	대한국수출량(B)	비율($C=A/B \times 100$)

다) 정상가격의 조정

- 정상가격에서 피신청인의 물류비용(내륙운반비, 창고비), 신용비용, 포장비용을 조정함
 - (물류비용) 내륙운반비, 창고비 등은 예비판정까지 거래건별 배분 기준 및 방식 등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 및 충분한 증빙이 부족하였으나, 실사에서 확인되어 정상가격에서 내륙운반비와 창고비 등 물류비용을 조정함
 - (신용비용) 실제 대금회수일을 추적하여 신용기간을 산정하였는지 여부, 단기차입금 이자율⁶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 (포장비) 실제 발생한 내수시장 평균 포장비를 판매수량으로 곱하여 산정하여 보고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59) '통상의 내수판매량'이란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과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을 통과하여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내수판매물량을 의미하며, 내수판매물량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물량과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물량 등을 제외한 물량이 '통상의 내수판매량'임

60) 피신청인의 단기차입금 이자율(xxx%)을 적용하였음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RMB/MT)

구분	정상가격(A)	조정 요소(B)		조정된 정상가격 (C=A-B)
		내륙운반비, 창고비용	신용비용, 포장비용	

8) 덤핑가격

가) 덤핑가격의 적용

- 피신청인은 대한국수출 시 비특수관계자인 한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하였으므로 한국에 판매한 실제 수출가격을 적용함

나) 덤핑가격의 조정

- 덤핑가격에서 내륙운반비, 창고비용,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포장비용을 조정함
- (내륙운반비, 창고비용,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거래건별 실제 발생금액을 추적하여 보고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조정함⁶¹⁾
- (신용비용) 실제 대금회수일을 추적하여 신용기간을 산정하였는지 여부, 단기차입금 이자율⁶²⁾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61) CIF 조건이나, 내륙운임 및 해상운임이 '0'으로 보고된 건은 보고비용 중 평균비용을 적용함

62) 중국인민은행 산하 중국 외환 거래시스템(China Foreign Exchange Trade System, CFETS)의 미국달러 단기차입금 이자율(xxx+%)을 적용하였음

- (은행수수료) 대금회수 증빙에 기재된 은행수수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 (포장비) 실제 발생한 수출시장 평균 포장비를 판매수량으로 곱하여 산정하여 보고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RMB/kg)

구분	덤핑가격 (A)	조정 요소(B)			조정된 덤핑가격 (C=A-B)
		내륙운반비, 창고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포장비용	

9) 과세가격

-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CIF⁶³⁾ 조건의 물량은 실제 수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적용하고, FOB⁶⁴⁾ 등의 조건의 물량은 CIF 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적용함

10) 최종덤핑률

-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피신청인의 최종덤핑률은 **2.26%**임

63) Cost, Insurance and Freight.

64) Free on Board.

(단위 : RMB/MT)

구분	대한국 수출량 (MT)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 ×100)	가중평균 덤핑률 (F)
최종덤핑률							2.26%

* 최종덤핑률은 CCN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라. 그 밖의 공급자

-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및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량으로 가중평균한 3.50%를 최종덤핑률로 산정함
- “그 밖의 공급자”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를 의미함
-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와 “진하이”의 덤핑률을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함
- 따라서 중국의 “그 밖의 공급자” 최종덤핑률은 “텐진루화,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의 최종덤핑률과 동일한 3.50%를 적용함

마.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검토

1) WTO 반덤핑 협정상 제2.2조의 특별시장상황

- WTO 반덤핑협정 2.2조는 수출국시장의 특별한시장상황(PMS)으로 내수 가격 對 수출가격의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 내수가격을 제3국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덤핑마진 = (조정된 정상가격 - 조정된 수출가격) / 수입국 과세가격

** 정상가격 : (원칙) 수출국 내수판매가격 / (예외) 제3국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 적용

2)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러-우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산 나프타 가격 급락을 특별한 시장 상황으로 보고, 이 때문에 중국 생산자들이 낮은 원가로 제품을 생산하여 덤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덤핑마진 계산 시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함
- 러-우 전쟁과 경제제재로 러시아산 나프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락했고, 이는 덤핑 조사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특별한 시장 상황임
- 러-우 전쟁 후 중국의 나프타 수입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20% 이상 급격히 낮아졌고, 러시아산 나프타가 중국 수입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며 가격은 크게 하락했음
- 중국 무역촉진위원회는 러-우 전쟁으로 저렴해진 러시아산 나프타가 석유수지 원가와 가격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줬다고 인정했음
- 나프타 생산 공정 특성상 러시아산 나프타 가격 하락이 석유수지 원가 하락으로 직결되어 중국산 석유수지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쳤음

3) 피신청인 의견

- PMS를 적용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나프타 시세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PMS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 기준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신청인의 의견은 기각되어야 함
- 미국의 인도산 석영제품 반덤핑 조사에서 제조자는 인도 정부의 가격 통제나 보조금 지급 등 PMS 관련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예비 및 최종 판정 모두에서 PMS가 적용되지 않았음
- 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PMS 적용을 줄곧 주장하면서도,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조사대상물품 생산자들의 원재료 구매에 가격왜곡이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했음
- 또한, 신청인은 나프타의 국제시세 변동에 대한 단순 주장만 있고, PMS에 따른 경제적인 분석자료 등 PMS를 적용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음
- 조사실은 실사 과정을 통해 피신청인의 제조원가 및 원재료 구매를 검증했으며 PMS로 인한 국내판매가격과 수출가격에 차등이 생기거나 PMS에 따른 영향은 없었음을 확인하였음
- 중국 무축위가 제출한 발언요지 해당내용은 한국 언론 기사를 인용해, 러-우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석유화학 업체의 실적 악화 원인이 중국산 수입덤핑이 아닌 러-우 전쟁 장기화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임

4) 조사실 검토

- 조사실은 중국산 석유수지의 특별시장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PMS를 주장하는 신청인에게 아래의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
- 그러나, 신청인은 러-우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입가격 하락 및 최대 수입국 변화 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PMS 판단 근거가 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조사실은 PMS를 적용하지 않음

- PMS 상황(정부개입 등에 의한 특별한 시장상황) 존재 여부 입증 : 신청인은 중국 정부의 개입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PMS가 조사대상물품의 가격에 미친 영향 분석·입증 (인과관계)⁶⁵⁾ : 유입된 러시아산 나프타가 중국시장 내에서 조사대상물품의 원가와 내수가격, 수출가격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밸류체인(나프타-기초유분-석유화학제품) 관련 자료 및 영향 분석 등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데이터가 부족함
 - 내수가격 vs 수출가격에 PMS가 다른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⁶⁶⁾ : PMS가 내수가격에만 영향을 미치고 수출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내수와 수출가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침으로써 둘간의 비교가 공정하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음
- * PMS가 내수와 수출가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 경우, 덤핑마진에 변화가 없어 PMS 판단 필요하지 않음

65) xxx

66) xxx

< 대만 >

가. 아로켄(Arochem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⁶⁷⁾

1) 공급자 개요

- 아로켄(Arochem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이하 “피신청인”)는 대만 가오슝에 소재하고 있으며, 아로켄은 생산자이자 내수판매자이며 관계사인 웬량은 아로켄의 수출판매사임
- ‘아로켄’과 관계사 ‘웬량’은 공통 주주 및 이사회 구성원이 있고, 사무실을 공유하는 관계사로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 및 지분관계 등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바, 단일경제실체(single economic entity)로 간주함⁶⁸⁾

2) 판매현황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경로>

· 내수판매

· 대한민국 수출

67) 웬량은 아로켄의 수출관계사로서 생산자이자 판매자인 아로켄을 대표로하고 웬량은 관계사로 표기함

68) 웬량 및 아로켄 개요

공급자명	10대 주주 지분율	선정여부	조사대상물품 관련 활동

*

- 조사대상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생산량은 약 xxx천톤으로 가동률은 약 xxx% 수준임
-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총매출액은 xxx백만NTD(약 xxx조원), 조사대상물품의 매출액은 xxx백만NTD(약 xxx조원), 대한민국 수출액은 xxx백만NTD(약 xxx억원)임
- 내수시장에 약 xxx천톤을 판매하였으며, 한국에 약 xxx톤을 수출하였음⁶⁹⁾

3) 답변서 제출 현황

- '24. 8. 2.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4.9.13.)
- '24. 8. 23.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
- '24. 9. 5. : 답변기한 연장신청
- '24. 9. 6. : 답변기한 연장 통보('24.9.13. → '24.9.23., 10일 연장)
- '24. 9. 23. : 답변서 접수
- '24. 11. 6. : 보충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4. 11. 13.)
- '24. 11. 8. : 답변기한 연장신청
- '24. 11. 11. : 답변기한 연장 통보('24.11.13. → '24.11.18., 5일 연장)
- '24. 11. 18. : 보충질의서 답변서 제출
- '24. 12. 10. : 예비덤핑률 산정 관련 이해관계인회의 개최 통보
- '24. 12. 17. : 예비덤핑률 산정 관련 이해관계인회의 개최(온라인)⁷⁰⁾

69) 피신청인 판매 개요

(백만NTD, MT)

구분	총매출액	조사대상물품 매출액	대한국 수출액	생산	내수	한국수출

70) 피신청인은 '24.12.17. 이해관계인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예비덤핑률 산정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음

- '25. 3. 17. ~ 3. 18 : 아로캠 및 그 관계사 실사 실시
- '25. 4. 15. ~ 4. 22 : 실사 결과 통보 및 의견 접수
- '25. 4. 23. ~ 4. 30. : 최종덤핑률(안) 산정내역 통보 및 의견수렴
- '25. 5. 2. : 최종덤핑률(안) 산정내역 관련 이해관계인회의 개최⁷¹⁾

4) 답변서 검토

-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수판매 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검토함

5) 자료의 사용

-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및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최종덤핑률을 산정함

6) 물품구분기준

-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 구성방법으로 ①등급(1=Prime, 2=Non-prime), ②주요구성요소(1 = C5, 2 = C9, 3 = 디싸이클로펜타디엔(DCPD), 4 = 혼합), ③수소첨가 여부, ④녹는 온도(1 = ~ 89℃, 2 = 90℃ ~ 109℃, 3 = 110℃ ~ 129℃, 4 = 130℃ ~ 149℃, 5 = 150℃ ~)를 제시함
- CCN은 재심사대상물품을 구분하는 물리적 특성들로 구성된 코드로서 조사질의서를 통해 피신청인들에게 제공됨
- * CCN 예시 : Prime등급의 수소가 첨가되지 않은 C5 석유수지(녹는점 100 ℃)인 제품의 CCN은 "1122" 로 표기

71)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최종덤핑률(안)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인 회의('25.5.2.)에 참석하지 않았음

- 피신청인은 CCN 안내서를 제공받고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⁷²⁾를 가졌으나, 별도 의견 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7) 정상가격

가) 내수판매 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토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수판매 가격이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을 실시함

(1)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 피신청인은 모든 내수판매물량을 비관계사인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검증 불요

(2)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

- 특수관계자 거래검증을 통과한 CCN에 대하여 단위당 순송장가격과 단위당 생산원가⁷³⁾를 비교함
 - 원가미만 판매 물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미만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고, 20%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함

(단위: kg)

구분	내수판매물량(A)	원가미만 판매물량(B)	원가미만판매비율 ($C=B/A \times 100$)	내수판매자료 사용여부

72) 이해관계인은 관보가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 CCN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73) 제조원가에 합리적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금융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구분	내수판매물량(A)	원가미만 판매물량(B)	원가미만판매비율 ($C=B/A \times 100$)	내수판매자료 사용여부

나) 내수판매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

-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내수판매 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함
-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 결과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내수판매에 대하여 전체물량 및 CCN별 수출물량 대비 5% 미만 여부를 검증함
 - 피신청인의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총 내수 판매량은 대한민국 수출량의 5%를 초과한 xxx%로, 전체 물량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 충분함
 - CCN별 통상의 내수판매량도 대한민국 수출량의 5% 미만 CCN은 없었음

(단위: kg)

구 분	통상의 내수판매량 ⁷⁴ (A)	대한국수출량(B)	비율($C=A/B \times 100$)

74) '통상의 내수판매량'이란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과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을 통과하여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내수판매물량을 의미하며, 내수판매물량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물량과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물량 등을 제외한 물량이 '통상의 내수판매량'임

다) 정상가격의 조정

- 정상가격에서 조기지급할인액, 금액조정, 내륙운반비,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판매수수료 및 포장비를 조정함
- (조기지급할인액)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내수 고객에게 조기지급할인을 제공했음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 (금액조정) 일부 거래처 대금이 송장 금액보다 약간 낮았으며, 그 금액이 매우 적었기에 회사는 그 부족액을 회수하는 데 드는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음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 (내륙운반비) 공장에서 내수 거래처가 지정한 장소까지 발생한 내륙운반비를 보고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 (신용비용) 실제 대금회수일을 추적하여 신용기간을 산정하였는지 여부, 단기차입금 이자율⁷⁵⁾의 적정성을 검토함
- (은행수수료) 회사는 각 판매에 대한 은행 수수료를 보고하였음을 확인함
- (판매 수수료) 제3자가 아로켄에 해당 판매를 소개한 것에 대해 일부 내수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했음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 (포장비) 포장 유형에 따라 포장재료 비용을 산정하여 국내 판매용 포장비를 계산하여 보고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NTD/kg)

구분	정상가격(A)	조정요소(B)			조정된 정상가격 (C=A-B)
		조기지급할인액, 금액조정, 내륙운반비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수수료	포장비	

75) 피신청인의 단기차입금 이자율(xxx%)을 적용하였음

구분	정상가격(A)	조정요소(B)			조정된 정상가격 (C=A-B)
		조기지급할인액, 금액조정, 내륙운반비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수수료	포장비	

8) 덤핑가격

가) 덤핑가격의 적용

- 피신청인은 대한민국수출 시 비특수관계자인 한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하였으므로 한국에 판매한 실제 수출가격을 적용함

나) 덤핑가격의 조정

- 덤핑가격에서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판매수수료 및 포장비용을 조정함
- (내륙운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거래건별 실제 발생금액을 추적하여 보고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조정함
- (신용비용) 실제 대금회수일을 추적하여 신용기간을 산정하였는지 여부, 단기차입금 이자율⁷⁶⁾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금액을 조정함

76) 피신청인이 제출한 미국달러 단기차입금 이자율(xxx%)을 적용하였음

- (판매수수료) 일부 판매에 대해 판매소개한 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했음을 수수료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조정함
- (은행수수료) 대금회수 증빙에 기재된 은행수수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조정함
- (포장비) 포장 유형에 따라 재료(종이가방, 팔레트, 드럼) 비용을 산정하여 수출 판매용 포장비를 계산하여 보고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조정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NTD/kg)

구분	덤핑가격 (A)	조정요소(B)			조정된 덤핑가격 (C=A-B)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거래수수료, 포장비용	

9) 과세가격

- 피신청인은 대한민국수출 시 CIF 조건으로 거래하였으므로 관세법 제 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 수출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적용함

10) 최종덤핑률

-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피신청인의 최종덤핑률은 **7.07%**임

(단위 : NTD/MT)

구분	대한국 수출량 (KG)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 ×100)	가중평균 덤핑률 (F)
최종덤핑률							7.07%

* 최종덤핑률은 CCN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나. 추엔화(Chuen Huah Chemical Co., Ltd.)

1) 공급자 개요

- '추엔화'는 조사개시 당시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어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덤핑조사질의서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

2) 답변서 제출 현황

- '24. 8. 2.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4.9.13.)
- '24. 8. 23.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
- '24. 9. 13.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후 미대응함

4) 답변서 검토 : 해당사항 없음

5) 자료의 사용

- 피신청인이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동 부속서2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 통관자료 및 조사신청서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최종덤핑률을 산정함
-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르면, 조사대상공급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수가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바,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가능함
-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23.8.2.~9.13.)을 정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함

-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조사당국이 이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판정을 내리는 경우,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덤핑가격 산정에 사용된 수입통계는 조사대상기간 중 독립된 기관인 관세청 통관자료로 공식 수입통계에 해당함
- 정상가격은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인 신청인의 신청서 자료로, WTO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인 출처로 신청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 정상가격에 구성가격을 적용하고 이에대한 증빙으로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 Trade Map의 대만 수입통계자료, Argus의 대만 제품별 생산능력 비중 자료, Formosan Union Chemical Corp.(FUCC)사의 2023년 감사보고서 자료를 제출하였음
- 특히,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2 제7조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은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덤핑률은 WTO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 2,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로서 관세청 통관자료와 조사신청서의 자료를 사용함

6) 정상가격

- 정상가격은 산정자료로 신청인의 신청서상 정상가격 자료를 적용함
- 신청인이 제출한 조정전 정상가격은 대만의 조사대상 공급자가 제출한 내수거래 건의 거래가격 범위내의 자료임

- 신청인은 내륙운반비 등의 직접 비용이 있을 수 있으나 파악하지 못하였고 또한 동 비용은 소액으로 덤핑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조정사항에 포함하지 않았음⁷⁷⁾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NTD/KG)

정상가격(A)	조정요소(B)	조정된 정상가격 (C=A-B)
	내수운반비	

7) 덤핑가격의 산정

- 덤핑가격은 '23년 평균 수입통관가격(CIF)을 덤핑가격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관세청 수입통계자료 등을 제출함
- 조정요소는 해상운임, 보험료 등을 덤핑가격 조정요소로 적용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신청인이 대만으로 수출시 발생한 보험료 및 해상운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함
- 신청인이 제출한 조정전 덤핑가격은 관세청 수입통계자료에서 제공한 평균 수입단가를 적용한 것임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NTD/KG)

덤핑가격 (A)	조정요소(B)			조정된 덤핑가격 (C=A-B)
	해상운반비	적하보험	소계	

77) 또한, 신청인은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덤핑가격의 조정사항 반영시 피신청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내륙운반비 등의 직접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음.

8) 덤핑률 산정결과

-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피신청인의 최종덤핑률은 **18.52%**임

(단위: NTD/KG)

조정된 정상가격(A)	조정된 덤핑가격(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최종 덤핑률 (E=C/D×100)
				18.52%

다. 그 밖의 공급자

-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및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량으로 가중평균한 **7.07%**를 최종덤핑률로 산정함
- “그 밖의 공급자”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를 의미함
-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추엔화”의 덤핑률을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함
- 따라서 대만의 “그 밖의 공급자” 최종덤핑률은 “아로켄 및 그 밖의 공급자”의 최종덤핑률과 동일한 **7.07%**를 적용함

Ⅲ. 국내산업의 피해

1. 국내산업 발전(확립)의 실질적 지연 여부

< 검토할 사항 >

- 국내산업이 발전(확립)중인 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발전중인 산업이라고 인정되면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함
- 국내산업의 발전의 실질적 지연 여부는 사업계획 및 산업여건상 기대경영성과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대경영성과와 실제경영성과를 비교하여 검토함

관련 법규

-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IV.5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판단 근거)
 - 국내산업의 확립의 실질적 지연 여부에 관한 조사·판정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함
 - 국내생산자가 상업적 생산을 개시한 경우에는 산업의 안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확립과정에 있는 산업으로 보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당해 산업의 실질적 지연 여부는 다음 사항을 근거로 판단함
 - 사업계획 또는 산업여건상 기대경영성과의 타당성
 - 기대경영성과와 실제경영성과의 비교
 - 국내산업의 안정성 여부는 국내생산물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여 생산의 기간·생산의 성격·국내 생산규모 등을 고려한 생산설비의 안정적 가동 여부, 합리적인 손익분기점 도달 여부, 국내시장에서의 안정적 지위 확보 여부 등에 근거하여야 함

- 국내 석유수지산업은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고, '23년 기준 국내시장의 xxx%를 점유하며 xxx톤의 생산량을 기록하는 등 국내산업은 이미 발전(확립)된 산업임
 - 따라서 본 건 조사에서 국내산업 발전(확립)의 지연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해당 없음

2.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

관련 법규

○ WTO반덤핑협정 3.1조

1994년도 GATT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1) 덤핑수입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2)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한다.

* 이 협정에서 "피해"라는 용어는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또는 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해석된다.

○ WTO반덤핑협정 3.2조

덤핑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덤핑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조사당국은 수입 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수입품에 의하여 상당한 가격 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영향이 달리 상당한 정도로 가격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러한 요소중 하나 또는 여러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 WTO반덤핑협정 3.4조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율, 또는 설비가동율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망라적이지 아니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3.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4.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
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가. 덤핑물품의 누적 평가 적용 여부

< 검토할 사항 >

-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서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인 경우에 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누적하여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함

관련 법규

-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덤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 관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영 제61조제4항 및 영 제63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영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1. 덤핑차액: 덤핑가격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2. 덤핑물품 수입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특정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 나.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 WTO 반덤핑협정 제3.3조

2개국 이상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이 동시에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a)각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과 관련하여 확정된 덤핑마진이 제5조 제8항에 정의된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며 각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고, (b)수입상품간의 경쟁조건 및 수입 상품과 국내 동종 상품간의 경쟁조건을 감안할 때 수입품의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적절하다고 조사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당국은 이러한 수입품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한-중 FTA협정 제7.13조

2개국 이상의 수입품이 동시에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의 대상이 될 때 한쪽 당사국은 다른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수입 상품 간 경쟁 조건 및 수입상품과 동종의 국내 상품간 경쟁조건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다.

1) 덤핑물품의 미소덤핑마진 및 미소수입물량 조건 충족 여부

- 덤핑물품의 공급국별 덤핑률은 각각 중국산 2.26 ~ 3.50%, 대만산 7.07 ~ 18.52%로 미소덤핑마진 기준인 2% 이상임
- 조사대상물품의 총수입물량 대비 덤핑물품의 국가별 수입물량 비중은 덤핑사실 조사대상기간('23.1.1~'23.12.31.) 동안 중국산 xxx%, 대만산 xxx%로 미소수입물량 기준인 3% 이상임⁷⁸⁾

2) 경쟁조건의 판단기준

- 덤핑물품의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덤핑물품 상호간 및 덤핑물품과 동종물품간 경쟁조건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들 간의 대체사용 가능성, 유통채널의 유사성, 같은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함

3) 덤핑물품간 경쟁조건

- 중국산, 대만산 덤핑물품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덤핑물품간에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 구성요소 및 용도, 제조방법, 유통 경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함
 -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은 매년 국내시장으로 수입되어 판매되었으므로 같은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78) '23년 총수입물량(xxx톤) 중 중국산은 xxx톤으로 xxx%, 대만산은 xxx톤으로 xxx%를 차지함

- 조사대상기간 중 톤당 판매가격을 보면, 중국산은 xxx~xxx천원, 대만산은 xxx~xxx천원으로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가격대에 있으며, 덤핑물품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가격 상승폭이 작은(연평균 2.1%) 중국산은 수입물량이 증가(연평균 16.9%)하였으나 연평균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연평균 3.6%) 대만산은 수입물량이 감소(연평균 -9.0%)한 점 등을 볼 때, 덤핑물품은 상업적으로 상호 대체되는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덤핑물품 수입 현황 >

(단위 : 톤, 천원/톤, %)

연도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중국산	물량	<u>1,000</u>	<u>1,266</u>	26.6	<u>1,417</u>	11.9	<u>1,597</u>	12.7	16.9
	단가	<u>1,000</u>	<u>1,021</u>	2.1	<u>1,124</u>	10.1	<u>1,065</u>	-5.3	2.1
대만산	물량	<u>1,000</u>	<u>1,102</u>	10.2	<u>785</u>	-28.8	<u>753</u>	-4.0	-9.0
	단가	<u>1,000</u>	<u>949</u>	-5.1	<u>1,084</u>	14.2	<u>1,111</u>	2.5	3.6
국내 동종물품	물량	<u>1,000</u>	<u>970</u>	-3.0	<u>718</u>	-26.0	<u>640</u>	-10.9	-13.8
	단가	<u>1,000</u>	<u>1,023</u>	2.3	<u>1,179</u>	15.2	<u>1,148</u>	-2.6	4.7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 시장점유율 현황 >

(단위 : %, %p)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변화율 (‘20~’23)
			변화율	변화율	변화율	
동종물품			-2.6	-6.5	-5.0	-14.1
덤핑물품			6.0	8.5	3.9	18.4
	중국산		5.8	9.1	4.1	18.9
	대만산		0.2	-0.6	-0.2	-0.5
기타국産 수입물품			-3.4	-2.1	1.2	-4.3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4) 덤핑물품과 동종물품⁷⁹⁾간 경쟁조건

-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은 국내 동종물품의 xxx~xxx% 수준의 저가로 판매되었고,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은 연도별 판매가격 등락의 방향도 일치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가격 상승폭이 작은(연평균 2.3%) 덤핑물품은 수입물량이 증가(연평균 14.6%)하였으나 연평균 가격 상승폭이 큰(연평균 4.7%) 동종물품은 판매물량이 감소(연평균 -13.8%)하여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한 것으로 판단함
- 아울러, 본 보고서 “I.3.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여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내생산품은 덤핑물품과 물리적 특성, 구성요소 및 용도, 품질 및 소비자 평가, 유통경로 등 대부분의 요소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은 국내시장에서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덤핑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 및 물량 비교 >

(단위 : 천원/톤, %, %p)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덤핑물품 수입물량	<u>1,000</u>	<u>1,248</u>	24.8	<u>1,348</u>	8.0	<u>1,504</u>	11.6	14.6
동종물품 내수판매물량	<u>1,000</u>	<u>970</u>	-3.0	<u>718</u>	-26.0	<u>640</u>	-10.9	-13.8
덤핑물품 판매가격(a)	<u>1,000</u>	<u>1,015</u>	1.5	<u>1,124</u>	10.7	<u>1,070</u>	-4.8	2.3
동종물품 판매가격(b)	<u>1,000</u>	<u>1,023</u>	2.3	<u>1,178</u>	15.2	<u>1,148</u>	-2.6	4.7
가격차이(a-b)			음수확대		음수확대		음수확대	음수확대
가격비율(a/b)			-0.7		-3.2		-1.8	-5.8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79) 이하 이 보고서에서 ‘동종물품’이란 국내산업이 생산하는 국내 동종물품을 말함

5) 종합 검토

- 이상 검토 결과, 중국 및 대만산 덩핑물품은 미소덤핑마진 및 미소수입물량 이상이며, 국내시장에서 덩핑물품간 상호 경쟁조건에 있고 덩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도 상호 경쟁조건에 있으므로,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덩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평가함에 있어서 누적적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나. 답변서 제출 및 산업피해 분석 대상 국내 생산자

- (중국측 주장) 한화솔루션(주)에 국내생산자 답변서 제출을 요청해야 하고, 생산자 답변서 제출이 어렵다면, 생산량, 가동률, 재고, 판매량, 시장 점유율, 가격, 이윤 등에 대한 산업피해지표 제출을 요청하여 본건 조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함
- (신청인 주장) 본 건 조사신청을 위해 한화솔루션(주)에 조사신청에 대한 의견 조회 및 조사참여 여부 확인을 위해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한화솔루션(주)에서는 국내판매량이 크지 않아 조사 불참을 결정⁸⁰⁾하였다고 주장
- (조사실 검토) 조사실은 국내생산자 2개사 모두에 대해 질의서를 발송('24.8.2.)하였고, 코오롱인더스트리(주)만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 * 국내생산자 질의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산업피해지표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됨
 - 조사실은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제출자료가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고,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여부를 분석함에 있어서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제출한 자료를 이용함

80) 한화솔루션(주)는 공청회('25.3.20.) 질의응답에서도 같은 입장이었음

다.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 검토할 사항 >

- 덤핑수입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함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WTO반덤핑협정 3.2조 중

덤핑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덤핑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1) 덤핑물품 수입물량의 절대적 증가 여부

-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20년 xxx톤에서 '23년 xxx톤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4.6%였음

< 덤핑물품 수입 현황 >

(단위 : 톤, %, 백만원)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덤핑물품 수입	물량	<u>1,000</u>	<u>1,248</u>	24.8	<u>1,348</u>	8.0	<u>1,504</u>	11.6	14.6
	금액	<u>1,000</u>	<u>1,266</u>	26.6	<u>1,514</u>	19.6	<u>1,610</u>	6.3	17.2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2) 덤핑물품 수입물량의 상대적 증가 여부

- 덤핑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18.4%p 상승하였음
 - 동종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14.1%p 하락함
 -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4.3%p 하락함
-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연평균 14.6% 증가하여 국내 소비(연평균 3.3% 감소)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시장점유율 또한 확대(18.4%p 상승)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종물품의 판매량(연평균 13.8% 감소)과 점유율(14.1%p 감소)은 국내소비보다 더 많이 감소하여, 덤핑물품 수입물량의 상대적인 증가가 확인되었음

< 국내소비 및 시장점유율 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 %p)

연도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a=b+e)	물량		<u>1,000</u>	<u>1,025</u>	2.5	<u>884</u>	-13.8	<u>903</u>	2.2	-3.3
	금액		<u>1,000</u>	<u>1,052</u>	5.2	<u>1,033</u>	-1.8	<u>986</u>	-4.6	-0.5
총수입 (b=c+d)	물량		<u>1,000</u>	<u>1,078</u>	7.8	<u>1,040</u>	-3.5	<u>1,152</u>	10.7	4.8
	금액		<u>1,000</u>	<u>1,116</u>	11.6	<u>1,232</u>	10.4	<u>1,253</u>	1.7	7.8
덤핑물품 수입 (c=c1+c2)	물량		<u>1,000</u>	<u>1,248</u>	24.8	<u>1,348</u>	8.0	<u>1,504</u>	11.6	14.6
	금액		<u>1,000</u>	<u>1,266</u>	26.6	<u>1,514</u>	19.6	<u>1,610</u>	6.3	17.2
	중국산 (c1)	물량	<u>1,000</u>	<u>1,266</u>	26.6	<u>1,417</u>	11.9	<u>1,597</u>	12.7	16.9
		금액	<u>1,000</u>	<u>1,292</u>	29.2	<u>1,592</u>	23.2	<u>1,700</u>	6.8	19.3
	대만산 (c2)	물량	<u>1,000</u>	<u>1,102</u>	10.2	<u>785</u>	-28.8	<u>753</u>	-4.0	-9.0
		금액	<u>1,000</u>	<u>1,046</u>	4.6	<u>850</u>	-18.7	<u>836</u>	-1.7	-5.8
기타국산 수입(d)	물량		<u>1,000</u>	<u>880</u>	-12.0	<u>683</u>	-22.4	<u>742</u>	8.6	-9.5
	금액		<u>1,000</u>	<u>958</u>	-4.2	<u>937</u>	-2.2	<u>882</u>	-5.9	-4.1
동종물품 판매(e)	물량		<u>1,000</u>	<u>970</u>	-3.0	<u>718</u>	-26.0	<u>640</u>	-10.9	-13.8
	금액		<u>1,000</u>	<u>992</u>	-0.8	<u>846</u>	-14.7	<u>734</u>	-13.2	-9.8
시 장 점 유 율	덤핑물품(c/a)				6.0		8.5		3.9	18.4
	기타 수입(d/a)				-3.4		-2.1		1.2	-4.3
	동종물품(e/a)				-2.6		-6.5		-5.0	-14.1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3) 이해관계인 주장 검토

- (중국측 주장) '20년부터 '22년까지 덤핑물품의 수입 증가는 기타국산 수입을 대체한 효과이고, '23년에는 조사대상물품 및 기타국산의 수입 모두 증가하였다고 주장
- (신청인 주장) 동일·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저가인 덤핑물품 수입 증가가 기타국산 수입물품만 대체하고, 국내생산품에는 영향이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불가능하다고 주장
- (조사실 검토)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18.4%p)한 반면, 국내동종물품은 지속적으로 감소(-14.1%p)하고, 기타국산 물품도 조사대상기간 중 4.3%p 감소하여 덤핑물품은 국내동종 물품과 기타국산 물품 모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라. 덤핑물품이 국내동종물품 가격에 미치는 효과

< 검토할 사항 >

-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함
- 덤핑물품이 동종물품에 비해 저가판매 되었는지 또는 덤핑물품으로 인해 동종물품의 가격인하 또는 가격인상 억제효과가 있었는지를 검토함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WTO반덤핑협정 3.2조 중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조사당국은 수입회원국의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수입품의 저가판매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영향이 달리 상당한 정도로 가격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1) 덤핑물품과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비교

-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년 xxx천원, '21년 xxx천원, '22년 xxx천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3년 xxx천원으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3% 상승하였음
-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년 xxx천원, '21년 xxx천원, '22년 xxx천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3년 xxx천원으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4.7% 상승하였음

- 조사대상기간 중 덩핑물품은 국내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되었으며, 판매가격 등락의 방향이 일치하고 있어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한 것으로 보임

< 덩핑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 >

(단위 : 천원/톤, %)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덤핑물품	<u>1,000</u>	<u>1,015</u>	1.5	<u>1,124</u>	10.7	<u>1,070</u>	-4.8	2.3
동종물품	<u>1,000</u>	<u>1,023</u>	2.3	<u>1,178</u>	15.2	<u>1,148</u>	-2.6	4.7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주) 덩핑물품 국내 판매가격=CIF가격+관세+통관제비용(4.0%)

2) 덩핑물품이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친 영향

가) 덩핑물품의 저가판매 여부

- 덩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 대비 '20년 xxx%, '21년 xxx%, '22년 xxx%, '23년 xxx% 수준으로 전체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덩핑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 비교 >

(단위 : 천원/톤, %, %p)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덤핑물품 판매가격(a)	<u>1,000</u>	<u>1,015</u>	1.5	<u>1,124</u>	10.7	<u>1,070</u>	-4.8	2.3
동종물품 판매가격(b)	<u>1,000</u>	<u>1,023</u>	2.3	<u>1,178</u>	15.2	<u>1,148</u>	-2.6	4.7
가격차이(a-b)			음수확대		음수확대		음수확대	
가격비율(a/b)			-0.7		-3.2		-1.8	-5.8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나)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하락시켰는지 여부

-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보다 저가였음
 -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21년과 '22년까지 상승하고, '23년 4.8% 하락하여 연평균 2.3% 상승하였음
 - 한편,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도 '21년과 '22년까지 상승하고, '23년 2.6% 하락하여 연평균 4.7% 상승하였음
- '23년 덤핑물품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xxx% 수준으로 저가에 판매되었고, 전년대비 4.8% 하락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전년대비 2.6%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다)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시켰는지 여부

- (중국측 주장) '21년 덤핑물품 판매가격 상승률은 동종물품 판매가격 상승률보다 높고⁸¹⁾, '22년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동종물품 판매가격이 15.2% 상승하였으며, '23년 덤핑물품 판매가격은 동종물품 판매가격보다 하락폭이 커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
- (신청인 주장) 덤핑물품 판매가격 상승률이 동종물품 판매가격 상승률보다 높더라도 덤핑물품의 절대적 가격수준이 낮아 제조원가 상승분을 동종물품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 (조사실 검토) '21년과 '22년 국내 동종물품의 제조원가는 전년대비 각각 15.1%, 30.0% 상승하였으나, 덤핑물품 판매가격이 전년대비 각각 1.5%, 10.7% 상승에 그침에 따라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전년대비 각각 2.3%, 15.2% 상승에 그쳐 제조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23년의 경우 덤핑물품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xxx% 수준으로 저가에 판매되었고, 전년대비 4.8% 하락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전년대비 2.6%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81)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https://tradedata.go.kr>) 기준으로는 '21년 덤핑물품 판매가격 상승률은 동종물품 판매가격 상승률보다 높으나,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서 비대상물품을 제외하면 '21년 덤핑물품 판매가격 상승률(1.5%)은 동종물품 판매가격 상승률(2.3%)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따라 목표판매가격 대비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 판매가격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20년 xxx% → '21년 xxx% → '22년 xxx% → '23년 xxx%)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은 목표판매가격을 반영하지 못함

< 국내 동종물품과 덤핑물품의 판매가격 >

(단위 : 백만원, 천원/톤, %, %p)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동종물품 판매가격(a)	<u>1,000</u>	<u>1,023</u>	2.3	<u>1,178</u>	15.2	<u>1,148</u>	-2.6	4.7
제조원가(b)	<u>1,000</u>	<u>1,151</u>	15.1	<u>1,496</u>	30.0	<u>1,457</u>	-2.6	13.4
제조원가비중(b/a)			7.4		8.6		0.0	16.0
덤핑물품 판매가격	<u>1,000</u>	<u>1,015</u>	1.5	<u>1,124</u>	10.7	<u>1,070</u>	-4.8	2.3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 국내 동종물품의 목표판매가격과 실제판매가격 >

(단위 : 원/톤, %, , %p)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동종물품 목표판매가격(a)	<u>1,000</u>	<u>1,130</u>	13.0	<u>1,506</u>	33.3	<u>1,545</u>	2.6	15.6
동종물품 실제판매가격(b)	<u>1,000</u>	<u>1,023</u>	2.3	<u>1,178</u>	15.2	<u>1,148</u>	-2.6	4.7
가격차이(a-b)								
가격비율(b/a)			-9.3		-12.0		-3.9	-25.2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주) 동종물품 목표판매가격 = (단위당 제조원가 + 단위당 판매관리비)÷(1 - 목표영업이익률⁸²⁾)

82) 국내생산자측이 덤핑수입품의 영향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년 신청인의 국내 동종물품의 영업이익률(xxx%)를 목표영업이익률로 제출한 바, 조사실에서는 이를 적용함.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산정함에 있어 '덤핑물품의 수입 또는 국내 시장점유율의 상당한 증가가 발생하기 이전의 국내 생산자의 이익률' 등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마.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검토할 사항 >

- 국내산업의 경영상태에 관한 지표에서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지를 검토함
 - 국내산업의 피해지표 : 생산량감소 · 가동률하락 · 재고증가 · 판매량감소 · 시장점유율축소 · 가격하락 · 이윤감소 · 투자수익감소 · 고용감소 · 임금하락 · 자본조달애로 · 투자축소, 기술개발 등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 · 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 4. 국내산업의 생산량 · 가동률 · 재고 · 판매량 · 시장점유율 · 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 · 이윤 · 생산성 · 투자수익 · 현금수지 · 고용 · 임금 · 성장 · 자본조달 · 투자능력
- WTO반덤핑협정 3.4조 중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 망라적이지 아니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1) 생산량 및 가동률

-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능력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간 xxx톤 수준을 유지하였음
-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20년 xxx톤에서 '21년 xxx톤으로 7.4% 증가하였으나, '22년 xxx톤으로 8.1% 감소, '23년 xxx톤으로 20.9%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7.9% 감소하였음
- 이에 따라 국내산업 가동률은 '20년 xxx%에서 '21년 xxx%로 상승했으나, '22년 xxx%, '23년 xxx%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17.9%p 하락함

- (중국측 주장) 생산감소는 ①신청인의 수출감소가 주원인이고, ②'19년 11월 한화솔루션(주)의 상업적 생산개시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
- (신청인 주장) ①전체판매량 대비 내수판매량 비중에 비해 전체판매 감소 물량 대비 내수판매 감소 물량 비중이 더 크고, ②한화솔루션(주)에 조사신청에 대한 의견 조회 및 조사참여 여부 확인을 위해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한화솔루션(주)에서는 국내판매량이 크지 않아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
- (조사실 검토) ①조사대상기간 중 신청인의 내수판매물량 감소율(연평균 -13.8%)이 수출물량 감소율(연평균 -4.9%) 및 생산량 감소율(연평균 -7.9%)보다 훨씬 큼 ②중국측은 한화솔루션(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조사실은 한화솔루션(주)에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한화솔루션(주)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70%대로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여 신청인의 제출자료가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대표함. 또한, 덤핑물품 수입이 '20년 대비 '23년 50.4%(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4.6%)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한화솔루션(주)이 DCPD 석유수지만 생산한 점을 고려할 때 한화솔루션(주)의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생산현황 >

(단위 : 톤, %, %p)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a)	<u>1,000</u>	<u>1,000</u>	0.0	<u>1,000</u>	0.0	<u>1,000</u>	0.0	0.0
생산량(b)	<u>1,000</u>	<u>1,074</u>	7.4	<u>987</u>	-8.1	<u>781</u>	-20.9	-7.9
가동률(b/a)			6.0		-7.2		-16.7	-17.9
내수판매물량	<u>1,000</u>	<u>970</u>	-3.0	<u>718</u>	-26.0	<u>640</u>	-10.9	-13.8
수출물량	<u>1,000</u>	<u>1,053</u>	5.3	<u>980</u>	-7.0	<u>861</u>	-12.1	-4.9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2) 판매 및 재고

-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0년 xxx톤에서 '21년 xxx톤, '22년 xxx톤, '23년 xxx톤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3.8% 감소함
- 동종물품의 기말재고는 '20년 xxx톤에서 '23년 xxx톤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8% 증가함
- 재고율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5.5%p 증가함

< 판매 및 재고 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천원/톤, %, %p)

구분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기초재고(a)	물량	<u>1,000</u>	<u>966</u>	-3.4	<u>1,099</u>	13.7	<u>1,268</u>	15.4	8.2
생산량(b)	물량	<u>1,000</u>	<u>1,074</u>	7.4	<u>987</u>	-8.1	<u>781</u>	-20.9	-7.9
총출하 (c=d+e+f)	물량	<u>1,000</u>	<u>1,039</u>	3.9	<u>945</u>	-9.0	<u>828</u>	-12.4	-6.1
	금액	<u>1,000</u>	<u>1,093</u>	9.3	<u>1,197</u>	9.5	<u>948</u>	-20.8	-1.8
	단가	<u>1,000</u>	<u>1,052</u>	5.2	<u>1,266</u>	20.4	<u>1,146</u>	-9.5	4.6
내수판매 (d)	물량	<u>1,000</u>	<u>970</u>	-3.0	<u>718</u>	-26.0	<u>640</u>	-10.9	-13.8
	금액	<u>1,000</u>	<u>992</u>	-0.8	<u>846</u>	-14.7	<u>734</u>	-13.2	-9.8
	단가	<u>1,000</u>	<u>1,023</u>	2.3	<u>1,179</u>	15.2	<u>1,148</u>	-2.6	4.7
수출(e)	물량	<u>1,000</u>	<u>1,053</u>	5.3	<u>980</u>	-7.0	<u>861</u>	-12.1	-4.9
	금액	<u>1,000</u>	<u>1,107</u>	10.7	<u>1,246</u>	12.5	<u>978</u>	-21.5	-0.7
	단가	<u>1,000</u>	<u>1,051</u>	5.1	<u>1,271</u>	20.9	<u>1,136</u>	-10.6	4.3
타계정대체(f)	물량	<u>1,000</u>	<u>891</u>	-10.9	<u>928</u>	4.2	<u>659</u>	-29.0	-13.0
기말재고(g)	물량	<u>1,000</u>	<u>1,137</u>	13.7	<u>1,312</u>	15.4	<u>1,054</u>	-19.7	1.8
재고율(g/c)	물량			1.9		6.0		-2.3	5.5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3) 시장점유율

-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년 xxx%에서 '21년 xxx%, '22년 xxx%, '23년 xxx%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14.1%p 하락함
- 이에 반하여 덤핑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년 xxx%, '21년 xxx%, '22년 xxx%, '23년 xxx%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18.4%p 상승함
- 기타국산 수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4.3%p 하락함
-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은 조사대상기간 중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 하락은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임
- (중국측 주장) '19년 11월 상업적 생산을 시작한 한화솔루션(주)의 부정적 영향(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음)으로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다고 주장
- (조사실 검토) 중국측은 한화솔루션(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조사실은 한화솔루션(주)에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한화솔루션(주)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70%대로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여 신청인의 제출자료가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대표함. 또한, 덤핑물품 수입이 '20년 대비 '23년 50.4%(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4.6%)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한화솔루션(주)이 DCPD 석유수지만 생산한 점을 고려할 때 한화솔루션(주)의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시장점유율 현황 >

(단위 : %, %p)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변화율 ('20~'23)
		변화율		변화율		변화율	
국내 동종물품		-2.6		-6.5		-5.0	-14.1
덤핑물품		6.0		8.5		3.9	18.4
기타국산 수입물품		-3.4		-2.1		1.2	-4.3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4)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는 '20년 xxx천원에서 '21년 xxx천원으로 15.1% 상승, '22년 xxx천원으로 30.0% 상승하다 '23년 xxx천원으로 2.6%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3.4% 상승하였음
- 항목별로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재료비 비중이 xxx~xxx%로 가장 커 동종물품 가격에 미친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재료비는 '21년 29.9% 상승, '22년 43.8% 상승한 후 '23년 16.9%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5.8% 상승하였음
- 한편, '20년 단위당 제조원가는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xxx%에서 '21년 xxx%, '22년과 '23년 xxx%로 상승했는데, 내수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제조원가 상승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책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컸을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기간 중 재료비는 연평균 15.8% 상승하고, 단위당 제조원가는 연평균 13.4% 상승하였으나, 덤핑물품 판매가격 상승폭이 연평균 2.3%에 불과함에 따라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연평균 4.7% 상승에 그쳐 제조원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내수판매가격 및 제조원가 >

(단위 : 천원/톤, %, %p)

구분 \ 연도	'20년	'21년 증감률	'22년 증감률	'23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국내동종물품 판매가격	<u>1,000</u>	<u>1,023</u> 2.3	<u>1,178</u> 15.2	<u>1,148</u> -2.6	4.7
단위당 제조원가 (a+b+c)	<u>1,000</u>	<u>1,151</u> 15.1	<u>1,496</u> 30.0	<u>1,457</u> -2.6	13.4
재료비(a)	<u>1,000</u>	<u>1,299</u> 29.9	<u>1,868</u> 43.8	<u>1,552</u> -16.9	15.8
(제조원가대비재료비 비중)		(6.8)	(6.4)	(-9.8)	(3.4)
노무비(b)	<u>1,000</u>	<u>965</u> -3.5	<u>994</u> 3.0	<u>1,310</u> 31.8	9.4
경비(c)	<u>1,000</u>	<u>987</u> -1.3	<u>1,097</u> 11.1	<u>1,365</u> 24.5	10.9
단위당 제조원가 비중 (판매가격 대비)		7.4	8.6	0.0	16.0
덤핑물품 판매가격	<u>1,000</u>	<u>1,015</u> 1.5	<u>1,124</u> 10.7	<u>1,070</u> -4.8	2.3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5) 덤핑마진의 크기

- 조사대상물품의 최종덤핑률은 2.26 ~ 18.52%로 미소마진 이상이고, 덤핑물품의 수입물량과 가격을 감안할 때 덤핑마진의 크기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6) 이윤

- 국내생산자의 동종물품 국내시장 매출액은 '20년 xxx백만원에서 '21년 xxx백만원, '22년 xxx백만원, '23년 xxx백만원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9.8% 감소하였음
- 내수부문 영업이익은 '20년 xxx백만원에서 '21년 xxx백만원, '22년 xxx백만원, '23년 xxx백만원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75.9% 감소하였음⁸³⁾
- 이에 따라 내수부문 영업이익률도 '20년 xxx%에서 '21년 xxx%, '22년 xxx%, '23년 xxx%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26.9%p 하락하였음
- (중국측 주장) ①신청인의 수출감소, ②'19년 11월 상업적 생산을 시작한 한화솔루션(주)의 부정적 영향(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음), ③노무비 및 제조경비 총액 증가, ④'22년 화물연대 총파업, ⑤판매관리비 증가로 동종물품의 국내판매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다고 주장
- (신청인 주장) ①전체판매량 대비 내수판매량 비중에 비해 전체판매 감소 물량 대비 내수판매 감소 물량 비중이 더 크고, ②한화솔루션(주)에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한화솔루션에서는 국내판매량이 크지 않아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③조사대상기간 중 노무비 및 제조경비 총액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3.72%)보다 낮았음 ④화물연대 파업은 '22년에 약 3주간⁸⁴⁾ 진행되었고, 파업을 주도한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화물기사의 6% 남짓으로 파업참여 화물기사는 컨테이너 트레일러나 시멘트를 운송하는 조합원 비율이 높았으며,

83) 신청인의 수출 비중이 높아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 증가가 국내산업의 전체(내수+수출)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있을 것이나, 내수부문 영업이익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84) '22.6.7.~'22.6.15., '22.11.24.~'22.12.9.

화물연대 파업이 사전 예고되어 신청인은 사전에 화물기사를 섭외하여 파업기간에도 정상적인 출고가 이루어졌음 ⑤판매관리비 증가는 주로 급여⁸⁵⁾ 및 지급수수료⁸⁶⁾ 등의 증가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 (조사실 검토) ①신청인의 내수판매 감소율(연평균 -13.8%)이 수출 감소율(연평균 -4.9%)보다 훨씬 큼 ②중국측은 한화솔루션(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조사실은 한화솔루션(주)에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한화솔루션(주)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70%대로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여 신청인의 제출자료가 국내산업의 피해 사실을 대표함. 또한, 덩핑물품 수입이 '20년 대비 '23년 50.4%(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4.6%)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한화솔루션(주)이 DCPD 석유수지만 생산한 점을 고려할 때 한화솔루션(주)의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③노무비 및 제조경비 총액은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각각 0.8% 및 2.2% 증가⁸⁷⁾하여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④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화물기사의 6% 남짓으로 파업참여 화물기사는 컨테이너 트레일러나 시멘트 운송하는 조합원 비율이 높았으며, 화물연대 파업이 사전 예고되어 신청인의 출고일정 조정 등으로 파업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음⁸⁸⁾ ⑤판매관리비 증가는 주로 급여 및 지급수수료 등 증가⁸⁹⁾에 따른 것이며, 조사대상기간 중 판매관리비의 변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조사대상기간 중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큰 폭(-22.7%p⁹⁰⁾)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85) 기술마케팅팀 및 품질경영팀 신설 등에 따른 인원 증가와 급여 인상

86) 회사 조직과 사업 개편을 위한 비용 증가

87) 노무비 총액은 '20년 xxx백만원에서 '23년 xxx백만원으로 연평균 0.8% 증가하였고, 제조경비 총액은 '20년 xxx백만원에서 '23년 xxx백만원으로 연평균 2.2% 증가함

88) 월별 내수판매물량 비교시 파업이 발생한 월(6월, 11월, 12월)의 판매량을 인접 월의 판매량과 비교시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이 뚜렷이 보이지 않음

연월	202205	202206	202207	202208	202209	202210	202211	202212	202301
판매량(톤)	1,000	859	735	668	776	878	984	747	676

89) 급여 증가는 고객사에 대한 서비스 증대를 위해 기술마케팅팀 및 품질경영팀 신설 등에 따른 인원 증가와 급여 인상에 따른 것이고, 지급수수료 증가는 회사 조직과 사업 개편을 위한 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보여짐

90) '23년 판매관리비가 '20년 판매관리비(xxx백만원)와 동일하게 발생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23년 영업이익률은 xxx%로 '20년 영업이익률(xxx%) 대비 22.7%p 하락함

< 내수부문 손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p)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매출액(a)	<u>1,000</u>	<u>992</u>	-0.8	<u>846</u>	-14.7	<u>734</u>	-13.2	-9.8
매출원가(b)	<u>1,000</u>	<u>1,112</u>	11.2	<u>1,049</u>	-5.7	<u>954</u>	-9.0	-1.5
매출총이익(c=a-b)	<u>1,000</u>	<u>828</u>	-17.2	<u>569</u>	-31.2	<u>434</u>	-23.8	-24.3
판매관리비(d)	<u>1,000</u>	<u>1,015</u>	1.5	<u>1,109</u>	9.3	<u>1,213</u>	9.4	6.7
영업이익(e=c-d)	<u>1,000</u>	<u>727</u>	-27.3	<u>278</u>	-61.7	<u>14</u>	-95.0	-75.9
영업이익률(e/a)			-7.3		-11.1		-8.5	-26.9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7) 투자수익률

- 국내산업의 투자자산총액 대비 영업이익으로 계산된 투자수익률은 '20년 xxx%에서 '21년 xxx%, '22년 xxx%, '23년 xxx%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15.1%p 하락하였음

< 투자수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 %p)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영업이익(a)	<u>1,000</u>	<u>744</u>	-25.6	<u>363</u>	-51.3	<u>293</u>	-19.1	-33.6
투자자산총액(b)	<u>1,000</u>	<u>1,128</u>	12.8	<u>1,165</u>	3.3	<u>1,089</u>	-6.5	2.9
투자수익률(a/b)			-7.0		-7.2		-0.9	-15.1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8) 현금흐름

- 동종물품과 관련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년 xxx백만원에서 '21년 xxx백만원, '22년 xxx백만원으로 순유입이 감소하였으나, '23년에는 xxx백만원로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8.2% 감소함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당기순이익(a)		<u>1,000</u>		<u>594</u>	-40.6	<u>251</u>	-57.8	<u>168</u>	-33.1	-44.9
비용(수익) 조정사항(b)		<u>1,000</u>		<u>4,954</u>	395.4	<u>4,994</u>	0.8	<u>3,780</u>	-24.3	55.8
영업 자산·부채의 변동(c)		<u>1,000</u>			음수전환		음수확대	<u>2,331</u>	양수전환	32.6
영업현금흐름 (a+b+c)		<u>1,000</u>		<u>680</u>	-32.0	<u>120</u>	-82.4	<u>371</u>	209.6	-28.2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9) 고용 및 임금

- 국내생산자의 연평균 고용인원(생산직+사무직)은 '20년 xxx명에서 '21년 xxx명, '22년 xxx명, '23년 xxx명으로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3% 증가하였음
- 1인당 평균임금은 '20년 xxx백만원에서 '21년 xxx백만원으로 16.0% 증가, '22년 xxx백만원으로 8.5% 감소, '23년 xxx백만원으로 1.7% 증가함에 따라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2.6% 증가하였음

< 고용 및 임금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명, %)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연평균 고용 인원	생산직	<u>1,000</u>	<u>1,035</u>	3.5	<u>1,004</u>	-3.0	<u>1,005</u>	0.1	0.2
	사무직	<u>1,000</u>	<u>966</u>	-3.4	<u>1,182</u>	22.4	<u>1,218</u>	3.0	6.8
	합계	<u>1,000</u>	<u>1,024</u>	2.4	<u>1,034</u>	0.9	<u>1,040</u>	0.6	1.3
연평균 1인당 임금	생산직	<u>1,000</u>	<u>1,161</u>	16.1	<u>1,055</u>	-9.1	<u>1,079</u>	2.2	2.5
	사무직	<u>1,000</u>	<u>1,147</u>	14.7	<u>1,101</u>	-4.0	<u>1,097</u>	-0.4	3.1
	합계	<u>1,000</u>	<u>1,160</u>	16.0	<u>1,061</u>	-8.5	<u>1,079</u>	1.7	2.6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10) 생산성

-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생산량 및 1인당 부가가치는 조사대상기간 중 고용인원에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생산량, 총매출액, 총부가가치의 변동에 따라 1인당 생산량은 연평균 9.1% 감소, 1인당 매출액은 연평균 3.0% 감소, 1인당 부가가치는 연평균 23.3% 감소함
- 1인당 생산량은 '20년 xxx톤에서 '21년 xxx톤, '22년 xxx톤, '23년 xxx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9.1% 감소하였음
- 1인당 매출액은 '20년 xxx백만원에서 '21년 xxx백만원, '22년 xxx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3년 xxx백만원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0% 감소하였음
- 1인당 부가가치는 '20년 xxx백만원에서 '21년 xxx백만원, '22년 xxx백만원, '23년 xxx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3.3% 감소하였음

< 생산성 관련 지표 >

(단위 : 명, 톤, 백만원, %)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고용인원(a)	<u>1,000</u>	<u>1,024</u>	2.4	<u>1,034</u>	0.9	<u>1,040</u>	0.6	1.3
생산량(b)	<u>1,000</u>	<u>1,074</u>	7.4	<u>987</u>	-8.1	<u>781</u>	-20.9	-7.9
총매출액(c)	<u>1,000</u>	<u>1,093</u>	9.3	<u>1,197</u>	9.5	<u>948</u>	-20.8	-1.8
총부가가치(d)	<u>1,000</u>	<u>691</u>	-30.9	<u>480</u>	-30.6	<u>469</u>	-2.2	-22.3
1인당 생산량(b/a)	<u>1,000</u>	<u>1,049</u>	4.9	<u>955</u>	-8.9	<u>751</u>	-21.4	-9.1
1인당 매출액(c/a)	<u>1,000</u>	<u>1,067</u>	6.7	<u>1,158</u>	8.5	<u>912</u>	-21.3	-3.0
1인당 부가가치(d/a)	<u>1,000</u>	<u>674</u>	-32.6	<u>464</u>	-31.2	<u>451</u>	-2.8	-23.3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11) 성장성

- 내수영업이익은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75.9% 감소하고, 시장점유율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14.1%p 감소하였으며, 가동률은 조사대상기간 중 17.9%p 감소하였음

< 성장성 관련 지표 >

(단위 : 백만원, %, %p)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내수 영업이익	<u>1,000</u>	<u>727</u>	-27.3	<u>278</u>	-61.7	<u>14</u>	-95.0	-75.9
시장점유율			-2.6		-6.5		-5.0	-14.1
가동률			6.0		-7.2		-16.7	-17.9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12) 자본조달능력

-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내부 자본조달능력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자본조달능력 관련 지표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 영업이익 ⁹¹⁾	<u>1,000</u>	<u>744</u>	-25.6	<u>362</u>	-51.3	<u>293</u>	-19.1	-33.6
- 내수영업이익	<u>1,000</u>	<u>727</u>	-27.3	<u>278</u>	-61.7	<u>14</u>	-95.0	-75.9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91) 총 영업이익 = (내수판매 + 수출)의 영업이익.

13)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매년 설비투자를 하였는바, '20년 xxx백만원, '21년 xxx백만원, '22년 xxx백만원, '23년 xxx백만원 등 조사대상기간 동안 설비투자 금액은 연평균 41.7% 증가함
- '21년 설비투자 증가는 여수공장의 플랫폼 배관 등에 대한 투자 발생에 따른 것임
- 연구개발⁹²⁾의 경우, '20년 xxx백만원에서 '21년 xxx백만원, '22년 xxx백만원으로 감소하다 '23년 xxx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6% 증가하였음

<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설비투자	<u>1,000</u>	<u>12,820</u>	1182.0	<u>2,525</u>	-80.3	<u>2,844</u>	12.6	41.7
연구개발	<u>1,000</u>	<u>1,009</u>	0.9	<u>1,004</u>	-0.5	<u>1,048</u>	4.5	1.6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92) 연구개발비는 모두 경상연구개발비임

14) 종합 검토

-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과 관세법령 등에 근거하여 덤핑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특히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와 통계 등 이용가능한 자료를 포함한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 다양한 산업피해 지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및 검토를 수행하였음
- 조사대상기간 동안 직접적 가격경쟁 관계에 있는 덤핑물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시장점유율도 증가하여, 동종물품의 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고, 덤핑물품의 저가판매에 의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이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동종물품의 제조원가가 조사대상기간 동안 판매가격 대비 xxx%에서 '21년 xxx%, '22년 xxx%, '23년 xxx%로 상승했는데, 내수 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국내생산자는 제조원가의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적절히 반영할 수 없었고, 이는 영업이익의 전반적 하락 등 실질적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의 생산량 및 가동률 하락, 내수판매량 감소, 영업이익의 감소, 투자수익률 감소, 현금흐름 악화, 1인당 부가가치 감소 등 국내산업피해에 관련된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종합하여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 주요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실질적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지표를 발견하였으므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우려' 여부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기로 함

IV. 덤프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1. 덤프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관련 법규

○ 관세법 제53조제1항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 덤프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프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관세법시행령 제63조

-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1. 덤프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2. 덤프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3. 덤프차액의 정도(덤프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4.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
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 WTO반덤핑협정 제3.5조

덤프수입품이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프의 효과를 통하여 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덤프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한다.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

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발전,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를 통하여 포함된다.

-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와 관련하여 덤핑물품 수입의 효과(물량증가 여부 및 가격 영향)와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덤핑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의 피해 발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됨
 - 첫째,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연평균 14.6%)했고, 국내시장 점유율도 xxx%에서 xxx%로 크게 증가(조사대상기간 중 18.4%p)하였으며, 이에 따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의 점유율은 xxx%에서 xxx%까지 조사대상기간 동안 14.1%p 하락하였음
 - 둘째, 덤핑물품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동종물품 대비 xxx%~xxx% 수준의 저가로 판매되었음
 - 조사대상기간 중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는 연평균 13.4%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덤핑물품 판매가격이 연평균 2.3% 상승함에 따라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연평균 4.7% 상승하여 제조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즉, 덤핑물품의 지속적인 저가판매와 낮은 수준의 가격상승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시킨 것으로 보임
 - 셋째,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량 증가와 동종물품 대비 저가판매로 동종물품의 생산량은 대체로 하락하였고, 국내시장점유율과 국내산업의 내수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 생산량은 연평균 7.9% 감소, 내수판매량은 연평균 13.8% 감소, 내수 영업이익률은 26.9%p 하락, 가동률은 17.9%p 하락했고, 1인당 부가가치는 연평균 23.3% 감소하는 등 국내산업피해 지표가 악화되었음

- 따라서, 조사실은 제출된 모든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함

< 덤핑물품과 주요 국내산업 피해 지표 >

(단위 : 톤, %, %p, 천원/톤, 백만원, 명)

지표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물 량	덤핑물품 수입		<u>1,000</u>	<u>1,248</u>	24.8	<u>1,348</u>	8.0	<u>1,504</u>	11.6	14.6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		<u>1,000</u>	<u>970</u>	-3.0	<u>718</u>	-26.0	<u>640</u>	-10.9	-13.8
시장 점유 율	덤핑물품				6.0		8.5		3.9	18.4
	동종물품				-2.6		-6.5		-5.0	-14.1
가 격	덤핑물품 판매가격(a)		<u>1,000</u>	<u>1,015</u>	1.5	<u>1,124</u>	10.7	<u>1,070</u>	-4.8	2.3
	동종물품 판매가격(b)		<u>1,000</u>	<u>1,023</u>	2.3	<u>1,178</u>	15.2	<u>1,148</u>	-2.6	4.7
	· 제조원가		<u>1,000</u>	<u>1,151</u>	15.1	<u>1,496</u>	30.0	<u>1,457</u>	-2.6	13.4
	(판매가격 대비 비중)				7.4		8.6		0.0	16.0
	· 가격 비율(a/b)				-0.7		-3.2		-1.8	-5.8
	목표판매가격 (b')		<u>1,000</u>	<u>1,130</u>	13.0	<u>1,506</u>	33.3	<u>1,545</u>	2.6	15.6
	· 가격 비율(b/b')				-9.3		-12.0		-5.1	-25.2
생산량			<u>1,000</u>	<u>1,074</u>	7.4	<u>987</u>	-8.1	<u>781</u>	-20.9	-7.9
가동률					6.0		-7.2		-16.7	-17.9
내수판매량			<u>1,000</u>	<u>970</u>	-3.0	<u>718</u>	-26.0	<u>640</u>	-10.9	-13.8
영업 이익	내수부문 영업이익		<u>1,000</u>	<u>727</u>	-27.3	<u>278</u>	-61.7	<u>14</u>	-95.0	-75.9
	내수부문 영업이익률				-7.3		-11.1		-8.5	-26.9
생산성 (1인당 부가가치)			<u>1,000</u>	<u>674</u>	-32.6	<u>464</u>	-31.2	<u>451</u>	-2.8	-23.3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2. 덤핑물품 수입 이외 기타 다른 요인의 영향

< 검토할 사항 >

-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인의 영향에 대해 검토
 - 덤핑물품 외의 수입품의 수입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행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발전,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3조

- ④ 무역위원회는 덤핑물품 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해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덤핑물품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3.5조 중

조사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 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 감소 혹은 소비행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이들 간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를 통하여 포함된다.

가.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물량 및 가격

- 덤핑물품 이외 기타국산 석유수지 수입물량은 '20년 xxx톤, '21년 xxx톤, '22년 xxx톤, '23년 xxx톤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9.5% 감소하였음
- 이에 따라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도 '20년 xxx%, '21년 xxx%, '22년 xxx%, '23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4.3%p 하락함
-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타국산 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덤핑물품 판매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기타국산 물품의 가격 효과가 국내 동종물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기간 중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과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고, 그 판매가격도 덤핑물품보다 높았으므로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 현황 >

(단위 : 톤, %, 천원/톤, %p)

구분 \ 연도		'20년	'21년	증감률	'22년	증감률	'23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덤핑물품	수입물량	<u>1,000</u>	<u>1,248</u>	24.8	<u>1,348</u>	8.0	<u>1,504</u>	11.6	14.6
	시장점유율			6.0		8.5		3.9	18.4
	판매가격	<u>1,000</u>	<u>1,015</u>	1.5	<u>1,124</u>	10.7	<u>1,070</u>	-4.8	2.3
기타국산 물품	수입물량	<u>1,000</u>	<u>880</u>	-12.0	<u>683</u>	-22.4	<u>742</u>	8.6	-9.5
	시장점유율			-3.4		-2.1		1.2	-4.3
	판매가격	<u>1,000</u>	<u>1,089</u>	8.9	<u>1,373</u>	26.1	<u>1,189</u>	-13.4	6.0
국내 동종물품	판매물량	<u>1,000</u>	<u>970</u>	-3.0	<u>718</u>	-26.0	<u>640</u>	-10.9	-13.8
	시장점유율			-2.6		-6.5		-5.0	-14.1
	판매가격	<u>1,000</u>	<u>1,023</u>	2.3	<u>1,178</u>	15.2	<u>1,148</u>	-2.6	4.7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나. 국내소비 변화

- 국내소비는 '20년 xxx톤에서 '21년 xxx톤으로 2.5% 증가 후 '22년 xxx톤으로 13.8% 감소, '23년 xxx톤으로 2.2% 증가하여 전체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3.3% 감소하였음
-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0년 xxx톤에서 '21년 xxx톤, '22년 xxx톤, '23년 xxx톤으로 연평균 13.8% 감소하여 국내소비의 감소율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반면,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20년 xxx톤에서 '21년 xxx톤으로 24.8% 증가, '22년 xxx톤으로 8.0% 증가, '23년 xxx톤으로 11.6% 증가하는 등 국내소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4.6% 증가하였음
- 국내소비가 감소한 시기에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 감소율은 국내소비의 감소율보다 더 컸고, 국내소비가 증가한 시기에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감소한 반면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지속 증가하였는바, 국내소비 변화가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국내소비 현황 >

(단위 : 톤, %)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u>1,000</u>	<u>1,025</u>	2.5	<u>884</u>	-13.8	<u>903</u>	2.2	-3.3
덤핑물품 수입	<u>1,000</u>	<u>1,248</u>	24.8	<u>1,348</u>	8.0	<u>1,504</u>	11.6	14.6
동종물품 내수판매	<u>1,000</u>	<u>970</u>	-3.0	<u>718</u>	-26.0	<u>640</u>	-10.9	-13.8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다. 수출 실적

-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량은 '20년 xxx톤에서 '21년 xxx톤으로 5.3% 증가, '22년 xxx톤으로 7.0% 감소, '23년 xxx톤으로 12.1% 감소하여 조사대상 기간 중 연평균 4.9% 감소함
- 내수판매물량은 조사대상기간 중 수출물량 감소(연평균 -4.9%)보다 큰 폭으로(연평균 -13.8%) 감소함
- 수출물량은 감소하여 내수판매물량 감소에 영향을 줄 여지가 없었고, 내수판매물량 감소율(연평균 -13.8%)이 수출물량 감소율(연평균 -4.9%)보다 훨씬 커 수출이 내수판매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임

< 수출 동향 >

(단위 : 톤, %, %p, 천원/톤)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출하량(a)	<u>1,000</u>	<u>1,039</u>	3.9	<u>945</u>	-9.0	<u>828</u>	-12.4	-6.1
수출량(b)	<u>1,000</u>	<u>1,053</u>	5.3	<u>980</u>	-7.0	<u>861</u>	-12.1	-4.9
수출비중(b/a)			1.2		2.0		0.3	3.4
수출 판매가격	<u>1,000</u>	<u>1,051</u>	5.1	<u>1,271</u>	20.9	<u>1,136</u>	-10.6	4.3
내수판매량(c)	<u>1,000</u>	<u>970</u>	-3.0	<u>718</u>	-26.0	<u>640</u>	-10.9	-13.8
내수비중(c/a)			-0.9		-2.3		0.2	-3.0
내수 판매가격	<u>1,000</u>	<u>1,023</u>	2.3	<u>1,178</u>	15.2	<u>1,148</u>	-2.6	4.7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 국내산업의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영업이익 비교 >

(단위 : 백만원, %, %p)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수출부문	영업이익	<u>1,000</u>	<u>746</u>	-25.4	<u>374</u>	-49.8	<u>334</u>	△10.9	△30.6
	영업이익률			-8.7		-10.0		13.5	△17.6
내수부문	영업이익	<u>1,000</u>	<u>727</u>	-27.3	<u>278</u>	-61.7	<u>14</u>	-95.0	-75.9
	영업이익률			-7.3		-11.1		-8.5	-26.9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라. 주요 원재료 가격추이

-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xxx ~ xxx% 수준이고, 주요 원재료는 C5, C9, DCPD임
- C5 톤당 가격은 '20년 xxx천원에서 '21년 xxx천원으로 33.2% 상승, '22년 xxx천원으로 49.6% 상승 후 '23년 xxx천원으로 16.1%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8.7% 상승하였음
- C9 톤당 가격은 '20년 xxx천원에서 '21년 xxx천원으로 30.6% 상승, '22년 xxx천원으로 52.3% 상승 후 '23년 xxx천원으로 9.0%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1.9% 상승하였음
- DCPD 톤당 가격은 '20년 xxx천원에서 '21년 xxx천원으로 26.5% 상승, '22년 xxx천원으로 49.4% 상승 후 '23년 xxx천원으로 22.0%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3.8% 상승하였음
- 조사대상기간 중 원재료비의 변동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과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원재료비의 변동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그러나, 조사대상기간 중 주요 단위당 원재료비가 연평균 13.8~21.9% 상승하였음에도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폭이 훨씬 작은 4.7%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 원재료비의 상승보다는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 억제 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이상에서 볼 때, 조사대상기간 중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주요 원재료 가격 >

(단위 : 천원/톤, %)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C5	<u>1,000</u>	<u>1,332</u>	33.2	<u>1,992</u>	49.6	<u>1,672</u>	-16.1	18.7
C9	<u>1,000</u>	<u>1,306</u>	30.6	<u>1,990</u>	52.3	<u>1,810</u>	-9.0	21.9
DCPD	<u>1,000</u>	<u>1,265</u>	26.5	<u>1,891</u>	49.4	<u>1,474</u>	-22.0	13.8
동종물품 판매가격	<u>1,000</u>	<u>1,023</u>	2.3	<u>1,178</u>	15.2	<u>1,148</u>	-2.6	4.7
덤핑물품 판매가격	<u>1,000</u>	<u>1,015</u>	1.5	<u>1,124</u>	10.7	<u>1,070</u>	-4.8	2.3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실사결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마. 기타 요인

- 위에서 검토한 사항 외에 WTO 반덤핑협정 제3.5조에서 열거한 외국 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발전, 국내산업의 상품 생산성 등 사항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들이 관련 증빙이 충분히 포함된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는 바 검토하지 아니함

아. 소결

-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과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고, 동종물품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대로 수입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기타국산 수입품이 물량 또는 가격 측면에서 국내산업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지속 감소하여 하락폭이 국내소비 변동폭보다 컸고, 국내생산자의 수출물량 감소율이 내수판매물량 감소율보다 작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소비 증감 또는 국내생산자의 해외수출 실적변동이 동종물품 내수판매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임
-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제조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재료비 가격의 상승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국내산업은 제조원가 변동내역을 판매가격에 제한적으로만 반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3. 인과관계 종합 검토

-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 수입물량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상당부분 대체하는 등 수입물량 측면에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 가격 측면에서도 덤핑물품은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저가판매되어 동종물품이 제조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덤핑물품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 또는 하락시킨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생산량 및 판매량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고 가동률 및 국내시장 점유율 또한 감소하였으며, 특히 국내산업의 주요지표인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 및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여 국내 동종물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고, 국내소비 연평균 감소율보다 동종물품 판매량의 연평균 감소율이 더 컸으며, 국내산업의 수출, 주요원자재 가격 변동 등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위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V.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1. 덤핑률 수준

< 중국 >

가. 답변서 제출 공급자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어 답변서를 제출한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와 ‘텐진루화,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 및 ‘진하이’에 대하여 각각 3.07%, 3.50%, 2.26%의 개별 덤핑률을 산정함

나. 그 밖의 공급자

-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및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량으로 가중평균한 3.50%를 최종덤핑률로 산정함⁹³⁾

< 대만 >

가. 답변서 제출 공급자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어 답변서를 제출한 ‘아로켄 및 그 관계사’에 대하여 7.07%의 개별 덤핑률을 산정함

나. 답변서 미제출 공급자

- 조사실은 ‘추엔화’에 질의서를 발송하고 충분한 회신기간을 부여⁹⁴⁾하였으나, 피요청인은 답변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93)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와 “진하이”의 덤핑률을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함. 따라서 중국의 “그 밖의 공급자” 최종덤핑률은 “텐진루화,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의 최종덤핑률과 동일한 3.50%를 적용함.

94)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 질의서 발송일로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부여해야 함
재심사 질의서 발송 : '24.4.29., 답변기한 : '24.6.10.
질의서 발송일 및 답변기한은 모든 재심사대상물품 공급자에 대하여 동일 적용

- 이에, 조사실은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조사에 대응하지 아니한 ‘추엔화’에 대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 2,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른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18.52%의 덤핑률을 산정함

다. 그 밖의 공급자

-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및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량으로 가중평균한 7.07%를 최종덤핑률로 산정함⁹⁵⁾

< 조사대상공급자별 최종덤핑률 (단위: %) >

공급 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최종 덤핑률	대응 여부
중국	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형허), Ningbo Yonghua Resin Co., Ltd. (용화) 및 그 관계사 - Henghe (Nanji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형허난징)	3.07%	대응
	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텐진루화), 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 - Zibo Luhua Hongjin New Material Group Co., Ltd. (쓰보루화) - Fujian Fuhua Luhua New Material Co., Ltd. (푸젠루화) - Shanghai Luhua Chemical Technology Co., Ltd. (상해루화) - Qingdao Yanggu Luhua New Materials Co., Ltd. (청도루화)	3.50%	대응
	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 (진하이)	2.26%	대응
	그 밖의 공급자	3.50%	
대만	Arochem Corporation (아로켄) 및 그 관계사 - Yuen Liang Industrial & Co., Ltd. (웬량)	7.07%	대응
	Chuen Huah Chemical Co., Ltd. (추엔화)	18.52%	미대응
	그 밖의 공급자	7.07%	

95)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추엔화”의 덤핑률을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함. 따라서 대만의 “그 밖의 공급자” 최종덤핑률은 “아로켄 및 그 관계사”의 최종덤핑률과 동일한 7.07%를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

-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과(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하며,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산정함에 있어 동종의 국내생산물품의 실제판매가격, 국내생산물품의 목표판매가격, 덤핑수입물품의 실제판매가격 등의 비교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무역위원회 고시 제2024-4호 제21조제1항)
-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으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하락했거나 상승이 억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은 목표판매가격과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을 상호 비교하고, 그 차액을 덤핑물품의 수입가격(CIF)과 대비시켜 도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text{산업피해 구제수준(\%)} = \frac{\text{동종물품 목표판매가격} - \text{덤핑물품 판매가격}}{\text{덤핑물품 수입가격(CIF)}} \times 100(\%)$$

< 덤핑물품과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

(단위: 천원/톤, %)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율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덤핑물품 판매가격	<u>1,000</u>	<u>1,130</u>	13.0	<u>1,506</u>	33.3	<u>1,545</u>	-4.8	2.3
덤핑물품 수입가격(CIF)	<u>1,000</u>	<u>1,016</u>	1.6	<u>1,128</u>	11.0	<u>1,074</u>	-4.8	2.4
동종물품 판매가격	<u>1,000</u>	<u>1,023</u>	2.3	<u>1,178</u>	15.2	<u>1,148</u>	-2.6	4.7
동종물품 목표판매가격	<u>1,000</u>	<u>1,130</u>	13.0	<u>1,506</u>	33.3	<u>1,545</u>	2.6	15.6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심사결과

주1) 덤핑물품 판매가격 = CIF가격 + 관세 + 통관제비용

주2) 동종물품 목표판매가격 = (단위당 제조원가 + 단위당 판매관리비) ÷ (1 - 목표영업이익률⁹⁶⁾)

96) 목표영업이익률은 덤핑수입품의 영향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년 신청인의 국내 동종물품의 영업이익률(xxx%)를 적용함

-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 산정 대상기간은 최근 1년('23년)임

$$\frac{\text{동종물품 목표판매가격} - \text{덤핑물품 판매가격}}{\text{덤핑물품 수입가격(CIF)}} \times 100(\%)$$

$$= \frac{\text{xxx(천원/톤)} - \text{xxx(천원/톤)}}{\text{xxx(천원/톤)}} \times 100(\%) = 79.50\%$$

3.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 덤핑방지관세율은 WTO규정 제9.1조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규정에 따라 덤핑률과 산업피해구제 수준 중 낮은 것을 적용함⁹⁷⁾
- 따라서,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공급자별로 2.26% ~ 18.52%로 산정함

< 최종 덤핑률 수준과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의 비교 >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최종 덤핑률 (dumping margin)	국내산업 피해구제 수준 (injury margin)	최종 덤핑방지 관세 부과수준
중국	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형허), Ningbo Yonghua Resin Co., Ltd. (용화) 및 그 관계사 - Henghe (Nanji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형허난징)	3.07%	79.50%	3.07%
	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텐진루화), 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 - Zibo Luhua Hongjin New Material Group Co., Ltd.(쯔보루화)	3.50%		3.50%

97) WTO반덤핑 규정 제9.1조 :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 (중략). 관세는 덤핑 마진 미만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한다.

공 급 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최종 덤핑률 (dumping margin)	국내산업 피해구제 수준 (injury margin)	최종 덤핑방지 관세 부과수준
	- Fujian Fuhua Luhua New Material Co., Ltd.(푸젠루화) - Shanghai Luhua Chemical Technology Co., Ltd.(상해루화) - Qingdao Yanggu Luhua New Materials Co., Ltd.(청도루화)			
	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진하이)	2.26%		2.26%
	그 밖의 공급자	3.50%		3.50%
대 만	Arochem Corporation(아로캠) 및 그 관계사 - Yuen Liang Industrial & Co., Ltd.(웬량)	7.07%		7.07%
	Chuen Huah Chemical Co., Ltd.(추엔화)	18.52%		18.52%
	그 밖의 공급자	7.07%		7.07%

VI. 무역위원회가 결정할 사항

<비공개>

<비공개>

참고 1

국내산업피해 조사 경과

- '24.05.31.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
- '24.08.02. : 조사개시결정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24-13호)
- '24.08.02. :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질의서 송부
- '24.08.13. : (주)삼성테이프, 수요자 답변서 제출
- '24.09.02. : 한국석유공업(주), 수입자, 수요자 답변서 제출
- '24.09.04. : 헨켈코리아(주), 수입자, 수요자 답변서 제출
- '24.09.05. : (주)대양산업, 수요자 답변서 제출
- '24.09.06. : (주)위드텍, 수입자 답변서 제출
- '24.09.09. : (주)세인폴리텍, (주)우일, (주)와이씨에이엠, (주)유창에프씨, (주)엠피화인, 수입자 답변서 제출
- '24.09.09. : 신청인, 국내생산자 답변서 제출
- '24.10.04. : 신청인, 의견서 제출
- '24.10.04. : 신청인, (주)엔피화인, 이해관계인들의 발언요지 제출
- '24.10.10.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이해관계인들의 발언요지 제출
- '24.10.15. : 국내산업피해 이해관계인들의 개최
- '24.10.22. : 신청인,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이해관계인들의 후 의견서 제출
- '24.10.22. : (주)엔피화인, 이해관계인들의 후 의견서 제출
- '24.11.22. : 신청인, 의견서 제출

- '24.12.19. : 예비판정(제455차 무역위원회)
- '25.01.17. : 공청회 개최 공고
- '25.01.21. ~ 22. : 국내생산자 현지실사
- '25.02.18. : 신청인, 리인타(중국 공급자, 무촉위 대리인), 공청회 발언요지 제출
- '25.03.20. : 공청회 개최
- '25.03.27. : 신청인, 공청회 후 의견서 제출
- '25.04.23. : 중간보고서 수정본 공개(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없었음)
- '25.05.22. : 최종판정(제460차 무역위원회)

참고 2

덤핑사실 조사 경과

- '24.05.31.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
- '24.08.02. : 조사개시결정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24-13호)
- '24.08.02. : 조사대상공급자*에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4.09.13.)
 - * (중국) 형허, 용화, 텐진루화, 우한루화, 진하이 / (대만) 원량, 추엔화 등 총 7개사
- '24.08.19. : 대만 추엔화, 조사대상공급자 제외요청서 제출
- '24.08.21.~08.23 : 조사대상공급자, 조사 참여신청서 제출
- '24.09.02. : 조사대상공급자 제외요청서 검토의견 회신
- '24.09.05. : 중국 및 대만 조사대상공급자, 답변서 제출 연장 요청
 - (용화 및 형허, 텐진루화 및 우한루화 답변기한 연장 : '24.9.13. → '24.9.23. 10일 연장 / 진하이 답변기한 연장 : '24.9.13. → '24.9.20. 7일 연장 / 원량 답변기한 연장 : '24.9.13. → '24.9.20. 7일 연장)
- '24.09.20. : 진하이, 원량 답변서 제출
- '24.09.23. : 용화 및 형허, 텐진루화 및 우한루화 답변서 제출
- '24.10.21. : 중국 모든 조사대상공급자 1차 보충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4.10.28.)
- '24.10.28. : 중국 모든 조사대상공급자, 1차 보충질의 답변서 제출
- '24.10.28. :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에 2차 보충질의서 송부(답변 기한 : '24.11.4.)
- '24.11.04. :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 2차 보충질의 답변서 제출

- '24.11.06. : '아로캠 및 그 관계사', 보충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4.11.13.)
- '24.11.13. : '웬량 및 그 관계사', 보충질의 답변서 제출
- '24.12.10. : 예비덤핑률 산정내용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12.16.) 제공
- '24.12.17. :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 '25.03.04. : 중국 텐진루화,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 대만 아로캠 및 그 관계사에 실사 안내서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4.03.12, '24.03.14)
- '25.03.12. : 중국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 진하이에 실사 안내서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4.03.20.)
- '25.03.13.~03.14. : 텐진루화,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 실사
- '25.03.17.~03.18. : 아로캠 및 그 관계사 실사
- '25.03.24.~03.26. :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 실사
- '25.03.27.~03.28. : 진하이 실사
- '25.04.15. : 실사 결과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4.22.) 제공
- '25.04.23. : 최종덤핑률(안) 산정내용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4.30.) 제공
- '25.05.02. :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최종덤핑률 관련)
- '25.05.22. : 최종판정(제460차 무역위원회)

무 역 조 사 실

무역조사실장 정 석 진

조 사 단

[국내산업피해조사]

조사단장	산업피해조사과장	류 동 희
조 사 관	산업피해조사과	나 강 운

[덤핑사실조사]

조사단장	덤핑조사지원과장	김 영 윤
조 사 관	덤핑조사지원과	김 학 배